

살생물처리  
제품제도이행  
가이드라인  
(제2판)  
2023.7.

살생물처리  
제품제도이행  
가이드라인  
(제2판)  
2023.7.

# 살생물처리 제품제도이행 가이드라인

(제2판)

2023.7.

# 일러두기

- 이 안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정의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 업체의 의무사항, 살생물처리제품의 제도 이행사항, 적절한 표시·광고 문구의 예시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 이 안내서는 현재까지의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법령 등이 개정될 경우 또는 법률 유권해석, 정책적 판단이 변화되는 경우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률, 시행규칙, 고시 등이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든 자료로, 관련 법령 및 상위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법령과 상위규칙을 우선 적용합니다.

※ 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284-1888)

# CONTENTS

## 살생물처리 제품 제도 이행 가이드라인(제2판)

<b>1</b>	<b>목적 및 용어 정의</b>	<b>04</b>
1.1	목적	05
1.2	용어 정의	05
<b>2</b>	<b>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제조·수입자의 의무</b>	<b>07</b>
2.1	화학제품안전법의 목적	08
2.2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의 주요 법적 의무사항	08
2.3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자의 법적 의무사항	09
2.4	살생물처리제품의 시장유통 전 위해성평가	10
2.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의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구분	10
2.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의 효과·효능 표시·광고	12
2.7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범위	12
<b>3</b>	<b>살생물처리제품과 살생물제품의 구분</b>	<b>14</b>
3.1	살생물처리제품과 살생물제품의 구분 기준	15
3.2	살생물처리제품과 살생물제품의 단계적 구분 방법	17
3.3	효과·효능 주장 유형에 따른 의무사항	21
3.4	복합제품의 구분	22
<b>4</b>	<b>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b>	<b>23</b>
4.1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24
4.2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25
4.3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이행 시기	28
<b>5</b>	<b>부록</b>	<b>31</b>
1.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의 세부 내용	32
2.	자주 묻는 질문(FAQ)	39
3.	화학제품안전법 내 살생물처리제품 관련 규정	46
4.	살생물처리제품 품목별 적합한 광고 예시	54

# 01 목적 및 용어 정의

1.1 목적

1.2 용어 정의

01

## 목적 및 용어 정의

### 1.1 목적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표시기준, 기록·보존 등의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이 가이드라인은 살생물처리제품과 살생물제품의 구분 방법, 안전·표시기준 및 적합한 광고 예시 등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의무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함
- ※ 이 가이드라인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에 적용되며, 다른 법률 적용 등에 따른 제외 범위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름

### 1.2 용어 정의

#### Ⓞ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에 따른 용어 정의

- **살생물물질(Biocidal active substance)**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7호)
  -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 등’)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 **살생물제품(Biocidal product)**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8호)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 **살생물처리제품(Treated article)**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9호)
  -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 \* 살생물처리제품에 직접 살생물물질로 처리하는 경우라도 해당 물질은 살생물물질이면서 동시에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므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을 모두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함(「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제1항 참고)

살생물물질(승인)



차아염소산 나트륨·에탄올

살생물제품(승인)



살충제·살균제·방역용소독제

살생물처리제품  
(승인된 살생물제품 사용)



보존제를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

### ③ '가이드라인' 상의 용어 정의

#### • 제품의 살생물 기능(Biocidal function)

- 제품의 살생물 기능은 제품이 가진 여러 기능 중 하나로서, **제품 이외의 대상**(제품 사용자 등)에 대한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을 말함
  - ※ 살생물 처리를 통해 얻은 제품 자체의 보호·보존 기능(부패방지, 세균 및 곰팡이 성장 억제 등)은 제품 이외의 대상에 대한 기능이 아니므로 살생물 기능으로 보지 않음
- 제품에 살생물 기능이 있는 경우 제품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기능이면 살생물제품으로, 제품의 부수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기능이면 살생물처리제품으로 구분됨

#### • 제품의 주된 목적(3.1, 3.2 참고)

- 제품의 살생물 기능이 **주된 목적**에 해당하여 **살생물제품**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대중의 건강 보호를 주장하는 경우
  2.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에 해당하는 경우

####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생물**을 제거 또는 억제하여 **제품의 사용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과 안전상의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명확히 하거나 암시**하는 경우

#### • 제품의 부수적 목적

- 제품에 **살생물 처리를 하였지만** 제품의 **부수적인 목적**에 해당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제품 자체의 보존이나 보호만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제품의 살생물 기능이 있지만 주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단, 제품의 살생물 기능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부수적 목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살생물제품(제품 승인, 승인된 살생물물질 사용)  
(대중 건강보호, 주기능이 살생물기능)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제, 살조제

살생물처리제품(승인된 살생물제품 사용)  
(부수적 목적, 제품 자체의 보존)



키보드에 곰팡이 생성 억제

## 02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제조·수입자의 의무

- 2.1 화학제품안전법의 목적
- 2.2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의 주요 법적 의무사항
- 2.3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자의 법적 의무사항
- 2.4 살생물처리제품의 시장유통 전 위해성평가
- 2.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의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구분
- 2.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의 효과·효능 표시·광고
- 2.7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범위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제조·수입자의 의무

## 2.1 화학제품안전법의 목적

-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화학제품안전법 제1조)

## 2.2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의 주요 법적 의무사항

-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여야 함(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
-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살생물제품 겉면에 기준에 맞는 사항을 표시하고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 제27조)

### 살생물제품 겉면·포장에 표시사항\*

• 제품명	• 제조자, 주소, 연락처	• 살생물물질	• 나노물질
• 살생물제품유형	(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 기타화학물질	
•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 수입자, 주소,	• 제품 유해성·위험성	
• 중량·용량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	• 사용방법	
• 효과·효능	•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	•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대상 제품에 한함)	• 승인번호	• 제조번호
• 표준사용량			

\* 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제26조,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및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 2.3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자의 법적 의무사항

-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새로운 위해성의 보고, 기록 및 보존 등의 의무가 있음(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 제30조, 제36조 및 제49조 등)

### - 안전기준(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제1항 및 시행령 제23조)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 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될 것
  - \* 유사성 기준: 국외에서 해당 살생물제품(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포함)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받아 승인·등록된 사항이 확인·유지되어 이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이 제조·수입·유통되는 동안 유효한 경우에 한해 적용됨(4.1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참고)

### - 표시기준(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7조)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위해성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 제품 겉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4.2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참고)

### - 정보제공(화학제품안전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4조)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가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함

###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화학제품안전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유통 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새로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정보
-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정보

### - 기록 및 보존(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고 10년간 보존해야 함

-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처리제품의 명칭, 제품명, 수량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사용량

### 2.4 살생물처리제품의 시장유통 전 위해성평가(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업체가 제품의 **시장 출시 전 유·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정부에 위해성평가를 요청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정보, 유해성 자료 및 제품 사용 시 노출정보 등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2.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의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구분

- **(살생물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중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10개 품목으로, 살균제품 4개 품목, 구제제품 5개 품목 및 목재용 보존제 1개 품목이 해당함
  - 안생품이면서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안생품의 신고·승인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제조·수입사, 제조원 동일**)을 사용하고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한 내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함
  - 해당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안생품 중 살생물제품 품목은 안생품에서 삭제될 예정임 ('24년, '26년 등)
    1. **(‘24년 승인유예)** 살균제와 구제제(9개 품목)는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22년까지 승인된 경우에 한해 '24년까지 살생물제품의 승인이 유예되며, 이후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에서 삭제됨
    2. **(‘26년 승인유예)** 목재용 보존제(1개 품목)는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24년까지 승인된 경우에 한해 '26년까지 살생물제품의 승인이 유예되며, 이후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에서 삭제됨
    3. 살생물물질별 승인유예기간이 상기 구분과 다를 수 있으므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최신 정보 확인 후 법부칙 제3조에 따라 살생물제품 유예기간 산정 필요
- ※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는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승인된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 물질 +2년이나,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 아니거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조·수입이 금지된 경우**,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는 단축되며, 상세내용은 화학제품안전법 부칙<제15511호, 2018. 3. 20.> 제3조를 따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 구분

분류	품목	신고/승인	살생물제품·처리제품 구분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신고	보존제 사용 시 살생물처리제품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신고	
코팅제품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신고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	신고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신고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신고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신고	
인쇄·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신고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신고	
여가용품 관리제품	운동용품 세탁광택제	신고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신고	살생물제품
	3.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승인	
구제제품	1. 기피제	신고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승인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신고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신고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신고	보존제 사용 시 살생물처리제품
	1.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2.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승인	

- **(살생물처리제품)** 안생품 품목 중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및 보존제가 사용되는 그 외의 제품은 모두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함
  - 다만, 살생물제품 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주된 목적**(제품명, 표시·광고 내용 등 고려)이 **‘항균’ 등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2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법 제56조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또한, '24년 이전이라도, 세정제, 방향제 등(43개 품목)에서 **살균, 살충, 가습기용 소독·보존** 등을 제품의 **주된 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10개 품목), 현행 규정에 따라 **미승인, 미신고된 안생품**으로 처분 가능

## 2.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의 효과·효능 표시·광고

- **(승인)**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살충제 등 6개 품목**과 기타 제품 2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안전성과 효과·효능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효과·효능에 한해 표시·광고 가능함(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6항 및 제8항 등)
- **(신고)** 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시험자료로 입증된 효과·효능에 한해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주장할 수 있음(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4항 및 제8항, 법 제34조제1항,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34조제2항제3조 등)
  - 다만, 해당 제품으로 시험한 효과·효능 자료만 인정되며, 원료물질 등의 시험자료로 입증된 효과·효능은 원료물질에 한정되므로 표시·광고 불가
  - ※ '21년 7월 1일 시행. 단, '21년 7월 1일 이전에 신고한 제품의 경우는 '23년 1월 1일부터 적용

## 2.7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범위<sup>1</sup>

- 아래에 열거된 다른 법에서 관리하는 살생물제(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화학제품 안전법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학제품안전법을 적용함(화학제품안전법 제5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
  -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單味飼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補助飼料)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처리물질

-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약품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 가공품,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sup>1</sup> 화학제품안전법 적용이 제외되는 제품의 세부 내용은 <부록 1> 참조

# 03

## 살생물처리제품과 살생물제품의 구분

- 3.1 살생물처리제품과 살생물제품의 구분 기준
- 3.2 살생물처리제품과 살생물제품의 단계적 구분 방법
- 3.3 효과·효능 주장 유형에 따른 의무사항
- 3.4 복합제품의 구분

# 03

## 살생물처리제품과 살생물제품의 구분

### 3.1 살생물처리제품과 살생물제품의 구분 기준

- 살생물처리제품과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 제거 등이 제품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구분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 제조·수입자의 의무와 책임 범위가 달라짐
  - 유해생물 제거 등이 제품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을 하거나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인 경우**로 해당 제품은 **살생물제품**에 해당함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판단 기준 및 사례는 다음과 같음
  - (판단 기준)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생물을 제거 또는 억제함으로써 제품의 사용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과 안전상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주장을 **명확히 하거나 암시하는 경우**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의 판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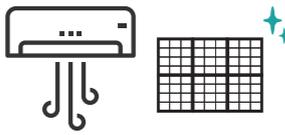
- 가. (질병 예방) 사용자나 다른 사람들의 **질병 예방** 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로, **특정 질병**에 대한 효과를 주장하거나 통칭하여 '**질병 예방**'을 주장
- 나. (특정 유해한 생물 제거) 사용자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지만,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특정 생물의 종류를 명시하거나 해당 생물을 제거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 다. (암묵적 주장) 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항균이나 방충 등 살생물 효과·효능**을 주장하여 **암묵적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을 하는 경우

- (사례)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에 해당하는 가. 질병 예방, 나. 특정 유해한 생물 제거, 다. 암묵적 주장 등의 사례는 아래와 같음

구분	사례
가. 질병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어컨 필터) 탈취 및 바이러스 억제하여 <b>질병 예방!!!</b></li> <li>• (의류) 향균·방취가공을 하여 <b>아토피성 피부와 알레르기 피부</b>에 위생적입니다</li> <li>• (의류) 은나노 향균위생가공으로 박테리아 및 유해바이러스를 차단시켜 <b>피부트러블을 최소화</b> 시킵니다.</li> <li>• (신발 깔창) 발냄새제거와 <b>무좀 및 습진 예방</b>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각종 성분이 함유된 이중 흡수포가 땀을 흡수하여 정화시켜주고 세균번식을 억제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li> </ul>
나. 특정 유해한 생물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대 매트리스커버) 집먼지 진드기 및 박테리아 방지</li> <li>• (문구류) 천연살균소독제 목단피 추출물로 <b>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99.99%</b> 살 수 없는 반영구적 환경을 인증 받았습니다</li> <li>• (의류) 진드기 방지 원단</li> <li>• (에어컨필터) 녹농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b>99.9% 살균</b></li> </ul>
다. 암묵적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성 페인트) 향균 페인트</li> <li>• (기능성 플라스틱) 향균 플라스틱</li> <li>• (의류) 우수한 향균 성능</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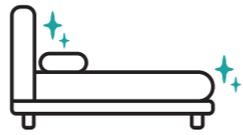
(예시) 제품 표시광고 문구에 따른 판단 예시

가. 질병 예방(살생물제품)



탈취 및 바이러스 억제하여 **질병 예방**

나. 특정한 유해한 생물 제거 (살생물제품)



집먼지 진드기 및 **박테리아** 방지 침대보

• ‘제품의 주기능’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판단 기준) 제품이 **살생물 기능**을 갖는 경우로 해당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에 해당할 경우는 살생물 처리제품이 아닌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됨(1.2 정의 참고)

※ 살생물 처리의 목적이 제품의 보존이거나 제품의 표시·광고 등에서 제품의 보존 또는 보호임을 명시하더라도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에 해당하면 살생물제품으로 구분

주기능 판단 기준

가. 제품에서 **살생물 기능이 없으면** 제품의 **가치가 현격히 저하되는 경우**(살균, 소독, 살충, 방충 등을 주장하는 경우 포함)

나.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유일한 기능인 경우**

다. **제품의 명칭 또는 명칭의 위치에 향균이나 방충 등을 뜻하는 유사 용어(제균,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항진드기 등)를 사용하는 경우**

라. **살생물 기능을 주장하면서 99.9% 제거 등 구체적인 효능을 주장하는 경우**

마. 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 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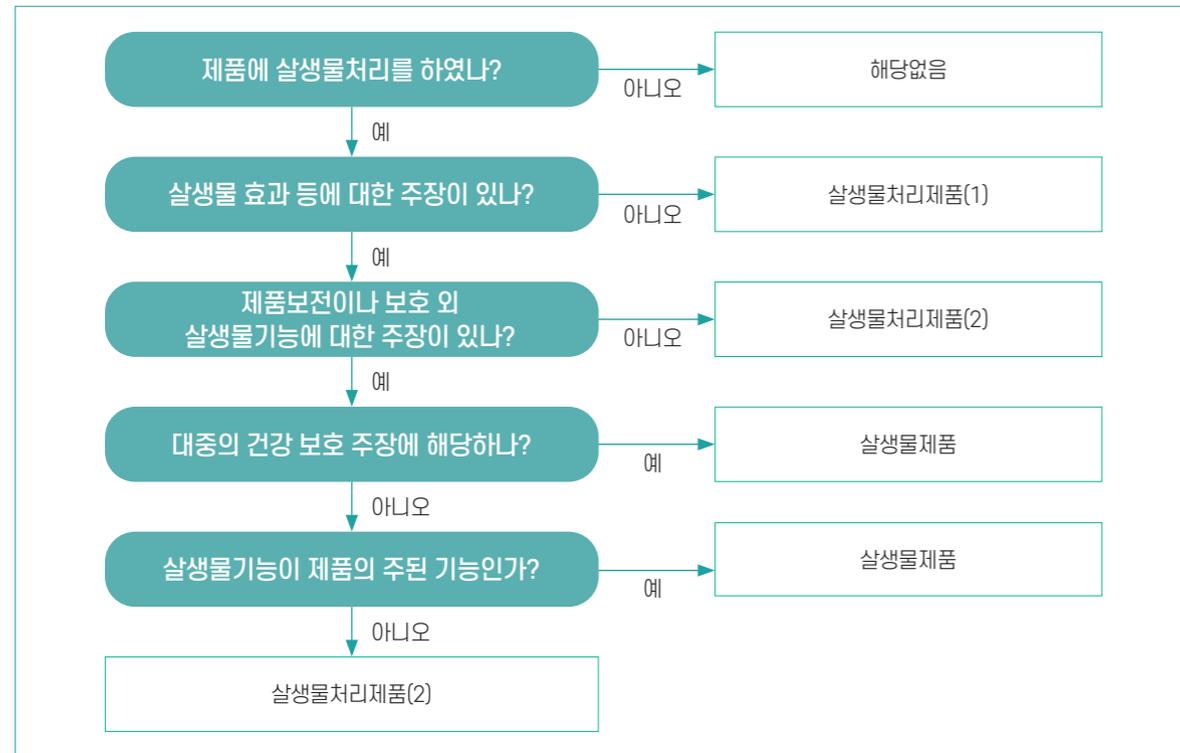
### 3.2 살생물처리제품과 살생물제품의 단계적 구분 방법

• 살생물처리제품과 살생물제품 구분은 제품의 효과와 효능 등 사용 목적 주장에 있어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또는 ‘제품의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에 해당하는지를 연계하여 판단해야 함

살생물처리제품과 살생물제품의 구분 방법

살생물처리하지 않음	살생물 처리 함				
	① 제품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효능 주장이 없음	제품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효능 주장이 있음			
		② 제품의 보존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 주장임	제품의 보존·보호의 목적 이외의 주장으로 살생물 기능이 있는 경우		
	③ ‘대중의 건강 보호주장’에 해당		④ 살생물 기능이 ‘주기능’에 해당	⑤ 살생물 기능이 ‘부기능’에 해당	
해당없음	살생물처리제품(1)	살생물처리제품(2)	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2)

살생물처리제품 및 살생물제품 구분을 위한 의사결정 순서



주장(표시·광고)에 따른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 구분 사례

• <사례 1> 침구류

구분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명) 항균 이불</li> <li>• (광고내용) 항균 효과로 진드기 방지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보다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li> </ul>	사이드 포켓에 항균처리된 필름을 사용했습니다.
판단근거	③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나', '다' 및 ④ 항균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판단기준 '가', '다'	② 침구류의 보호를 명시한 살생물처리제품(2)

• <사례 2> 가구

구분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주장	피톤치드는 인체의 면역력 강화, 항균, 소취 및 유해물질 중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없음(살생물 처리가 아님)
판단근거	③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가', '다'	

• <사례 3> 의류

구분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명) 항균 내의</li> <li>• (광고 내용) 미생물의 성장을 99.9% 억제하는 특수 항균원단을 사용하여 어린이의 아토피 예방에 도움을 주는 내의입니다</li> </ul>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특수원단을 사용하여 냄새 제거 효과가 있는 내의입니다
판단근거	③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가' 및 ④ 항균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판단기준 '가', '다', '라'	② 제품 자체의 보호를 명시(냄새 제거는 제품 보호로 간주)한 처리제품(2)

• <사례 4> 가방

구분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주장	(제품명) 안전한 항균필름 사이드 포켓	사이드 포켓에 항균처리된 필름을 사용했습니다.
판단근거	③ 항균필름으로 안전을 확보했다는 것은 대중의 건강을 보호한다고 해석되므로,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가' ④ 항균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 판단기준 '가', '다'	② 항균처리로 표현하여 제품 보호, 처리제품(2)

• <사례 5> 신발

구분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주장	Ag ion 항균 처리가 적용된 안감은 혈행성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Ag ion 항균 처리가 적용된 안감은 세균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판단근거	③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가'와 '나'	② 제품 자체의 보호를 명시한 처리제품(2)

• <사례 6> 마스크 파우치

구분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주장	세균 잡는 휴대용마스크 케이스 항색포도상구균, 대장균, 폐렴구균 99.9% 항균	항균처리된 마스크 보관케이스로, 마스크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판단근거	③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나'와 ④ 제품의 주기능 판단기준 '라'의 구체적 효능 주장(99.9%)	② 제품 자체의 보호를 명시한 처리제품(2)

살생물제품(승인)



마스크 항균파우치

**표시·광고 내용** (제품의 주된 목적)  
마스크 파우치에 마스크를 보관하면 마스크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제거됨

살생물처리제품 (승인된 살생물제품 사용)



항균 처리된 마스크 파우치

**표시·광고 내용** (제품 보존·보호 등 부수적 목적)  
마스크 파우치에 항균처리가 되어 마스크를 위생적으로 보관

3.3

효과·효능 주장 유형에 따른 의무사항

- '3.2 살생물처리제품과 살생물제품의 단계적 구분 방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살생물처리제품은 효과·효능 주장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법적 의무사항을 아래 표에 나타냄

살생물처리제품 종류별 의무사항 정리

구분	효과·효능 주장 없음	효과·효능 주장 있음
	처리제품(1)	처리제품(2)
예시 품목	세제	침구류
광고 문구	없음	항균처리로 제품에 미생물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구분	효과와 효능을 주장하지 않는 처리제품	일반적인 제품의 보호와 관련한 효과와 효능을 주장하는 처리제품
구분 사유	없음	명백하게 제품을 보호한다는 표현 존재
법적 의무	1)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승인된 용도에 맞게 사용 2) 처리제품 구매자 요청 시 사용된 살생물제품 정보 제공 3) 살생물제(물질, 제품, 처리제품)의 새로운 유·위해성, 효능 등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4) 기록 및 보존 ※ 다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조건에 따라 처리제품에서 표시사항 발생할 수 있음(4.2 참조)	1)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승인된 용도에 맞게 사용 2) <b>법 제28조제2항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b> 3) 처리제품 구매자 요청 시 사용된 살생물제품 정보 제공 4) 살생물제(물질, 제품, 처리제품)의 새로운 유·위해성, 효능 등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5) 기록 및 보존 ※ 다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조건에 따라 처리제품에서 표시사항 발생할 수 있음(4.2 참조)

### 3.4 복합제품의 구분

- 여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복합제품의 경우, 부품 중 하나 이상이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고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기능이 최종 제품에 상당히 존재한다면, 부품과 최종 제품 모두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
  - 예를 들어, 항균 처리된 실로 의류를 생산할 경우, 최종제품에 해당하는 원단 해당 실과 원단, 의류 모두 살생물처리제품임
  - 자동차에 살생물처리제품인 핸들이 사용된 경우, 자동차를 살생물처리제품으로 보지는 않으나, 핸들의 처리제품으로서의 효과·효능을 알리려는 경우 표시기준이 적용되므로, **자동차 사용설명서**에 핸들이 **살생물처리**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며 **표시사항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함**
- 다만,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살생물 목적이나 기능이 특정 공정 단계에서만 나타나고, 복합제품(최종 완제품)에는 효과나 기능이 없는 경우, 해당 완제품은 처리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원사의 염색제에 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었어도 해당 보존제의 보존 기능이 원사 제품에서 작용하지 않는다면, 원사나 원사로 가공된 옷을 처리제품으로 보지는 않음
- 복합제품의 부품 중 하나 이상을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경우, 최종제품에 대한 광고나 표시 수준에 따라 살생물제품이 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냉장실 내부에 곰팡이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표면처리를 한 경우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고
  - 냉장고에 대해 보관된 음식의 살균을 위해 화학물질이나 천연물질 등을 방출시키거나 생성하는 살균장치를 부착한 냉장고의 경우 살생물제품으로 볼 수 있음. 다만 화학물질, 천연물질, 미생물 등에 의한 살생물 기능이 아닌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에 따라 살생물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됨

살생물처리제품 ◦



보존제를 사용한 원사로 만들어진 옷  
(항균 기능 x)

살생물처리제품 ×



보존제가 함유된 안료로 염색한 옷

살생물제품 ◦

보관중인 음식에 대한 살균효과를  
주장하는 냉장고

## 04

###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4.1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4.2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4.3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이행 시기

#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 4.1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 살생물처리제품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할 것(화학제품 안전법 제28조제1항1호)
- **수입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할 것
  - 유사성 기준이란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가, 나,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사용된 살생물제품이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임(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23조)

### 수입 살생물처리제품의 유사성 기준

-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승인된 바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으로 사용된 살생물물질
- 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다.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해당 살생물제품유형으로 사용될 경우에 대한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살생물물질
- 라.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통하여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이 인정되었을 것

※ 외국 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은 국내의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 승인 시의 안전성 평가 수준에 부합하는 유럽, 미국 등의 국가에 한정

## 4.2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에 대한 효과·효능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경우는 **표시 의무가 있음**. 예를 들어, 살생물처리로 인해 제품이 보호된다는 주장을 한다면 표시를 하여야 함
  - 또한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 승인 조건으로 해당 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특정 내용을 표시하여 알리는 것이 조건으로 부여되었다면, 유해생물에 대한 효과·효능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승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표시해야 함



-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제2항)

###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 사항

- 가.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 나.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 다.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그 함유 사실
- 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사용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시 부여된 처리제품의 표시사항(해당 경우에 한해 적용)

표시사항	표시방법	예시
1.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 살생물처리제품에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표시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의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살생물제품 유형도 함께 기재	본 제품에는 살생물제품(섬유·가죽용 보존제)이 사용되었습니다.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에서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기능을 표시	살생물물질 : CMIT (제품보존용 보존제)
3.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그 함유 사실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해당 물질의 명칭과 함께 표시	본 제품에는 나노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나노물질 : 은나노)
4.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표기된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살생물제품의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li> <li>• 사용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통지서에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 시 표시하여야 할 위험성 및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용도 표시</li> <li>• 그 밖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으로 인해 유해·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필요한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함</li> </ul>	

※ 표시를 조건으로 승인된 살생물제품의 경우 승인조건에 명시된 내용 표시

•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음

-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함(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 방법**

- 가.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 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 다.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 라.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3.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분 참조)

\* 살생물처리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살생물 기능을 통해 대중(사용자)의 건강을 보호한다거나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된 기능인 것처럼 표현하는 등 사용자가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살생물처리제품 표시사항 예시**

**살생물처리제품 표시사항**

본 제품에는 살생물제품(살생물제품유형)이 사용되었습니다.  
 [함유된 살생물물질: 물질명(기능)]  
 본 제품에는 나노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나노물질: 물질명)



그림  
문자



그림  
문자



그림  
문자

**신호어**

위험성  
취급 시 주의사항

※ 그림문자 및 신호어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사항은 해당 제품 겉면에 표시하되, 겉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제품의 겉면에는 아래 표시사항을 표시한 후 나머지 사항은 제품 포장, 첨부문서, 라벨 또는 꼬리표(태그) 등에 표시할 수 있음

**본 제품에는 살생물제품(살생물제품 유형)이 사용되었습니다.**

- 살생물처리제품이 묶음 단위로 포장되거나 제품의 일부분이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에 표시하거나 사용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음

- (예1) 벽지 : 여러 장의 벽지가 묶음으로 포장된 경우 묶음 포장에 살생물처리제품 표시사항을 표시
- (예2) 자동차 : 자동차 좌석 커버가 항균처리된 가죽인 경우 자동차 사용설명서에 좌석 커버에 대한 살생물처리제품 표시사항을 표시

- 살생물처리제품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하나, 중복되는 사항은 반복해서 표시하지 않아도 됨

### 4.3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이행 시기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15511호, 2018. 3. 20.> 제4조 참고)

- 살생물처리제품에 부적합한 표시·광고로 인해 법 제3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 \* 방향제나 탈취제 또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이면서 대중(사용자)의 건강을 보호한다거나 제품명에 '항균'·'항바이러스'를 넣는 등 제품의 주기능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 살균제 등 '22년 승인유예 대상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4년까지 제품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2024년 12월 31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을 이행해야함(2025년 1월 1일부터 미승인된 살생물제품으로 처분될 수 있음)
  - 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처리제품에 해당하는 품목(34개)임에도 주장하는 살생물 기능이 살균제, 살충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등과 같이 제품의 주된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10개 품목), 현행 규정에 따라 미승인, 미신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처분 가능함
-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 「화학제품안전법」상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이행해야 하는 시기(경과조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자는 취급하는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승인 유예기간 및 승인 여부 등을 주의해서 살펴야 함
  -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경과조치기간은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 승인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임(승인된 살생물물질 기준 +4년)
  - 다만,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19조에 따라 제조·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조·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 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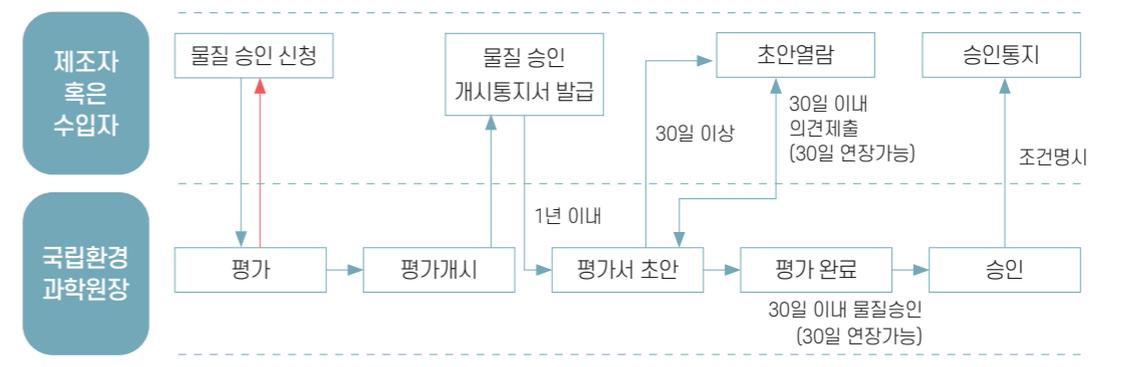
### 사용된 보존제 유형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의 경과조치

살생물처리제품 유형	살생물처리제품 내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신고·승인여부에 따른 경과조치기간(유예기간)*		
	살생물물질이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서 지정해제 또는 제조·수입이 금지된 경우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미신고한 경우
목재용 보존제로 처리된 목재	2028.12.31.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해제일 또는 제조·수입 금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3년	2022.12.3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로 처리된 제품	2031.12.3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로 처리된 제품	2033.12.31.		

\*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경과조치를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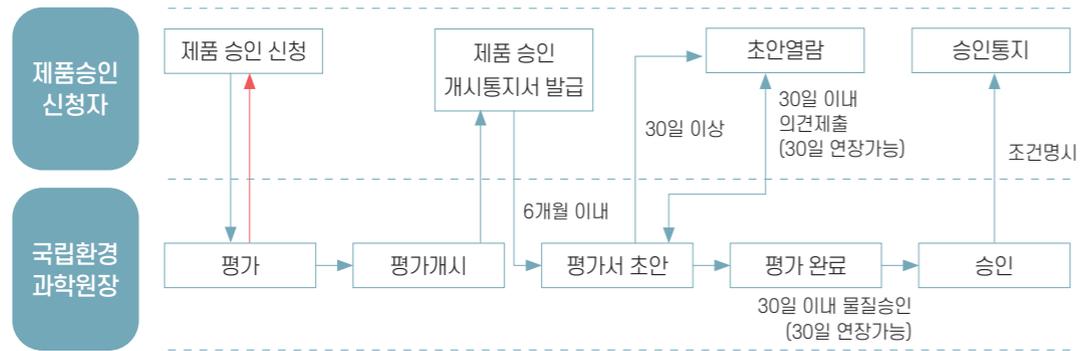
#### (참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

- 살생물물질의 승인
  -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을 위해서는 물질의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용도, 노출정보, 유해성, 위해성, 효과·효능, 분류·표시 등의 첨부자료를 갖추어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와 함께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유예기간 내에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함



• 살생물제품의 승인

-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을 가진 자는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을 위해서는 함유 성분, 배합비율, 물질 공급자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용도, 노출정보, 유해성, 위해성, 효과·효능, 분류·표시 등의 첨부 자료를 갖추어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와 함께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유예기간 내에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함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과 관련된 절차, 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국립환경과학원(1800-4840), 중소기업 승인지원은 살생물제 산업계지원팀(02-6050-131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제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고객지원센터(1800-0490, 3번)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 부록

1.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의 세부 내용
2. 자주 묻는 질문(FAQ)
3. 화학제품안전법 내 살생물처리제품 관련 규정
4. 살생물처리제품 품목별 적합한 광고 예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대상	소관부처	법률	세부 내용
건강기능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군수품 <sup>2</sup> (통상품 제외)	국방부	군수품관리법 제2조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농림축산식품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 <sup>3</sup> 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sup>4</sup>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의2	“천연식물보호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sup>5</sup>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sup>2</sup> 용도, 성질, 보급방법에 따라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 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로 분류하며 이중 일반물자류와 유류가 살생물제일 수 있음

\* 일반물자류 : 화생방물자(연막류, 지역장비제독제류 등)

\*\* 유류 : 화공약품류(화공약품, 정수약품, 방역약품, 부동액 등)

<sup>3</sup>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동물(달팽이·조류 또는 야생동물) 및 식물(이끼류 또는 잡초)

<sup>4</sup>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기피제, 유인제, 전착제

<sup>5</sup>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10조에 따라 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 및 원제

대상	소관부처	법률	세부 내용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농림축산식품부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	“원제(原劑)”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의2	“농약활용기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sup>6</sup> 가.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나. 살균·살충·제초·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수처리제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	“수처리제(水處理劑)”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淨水)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sup>7</sup>
사료(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농림축산식품부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sup>8</sup>
선박평형 수처리물질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조제10호	“처리물질”이란 유해수생동물을 처리하는 데에 사용되는 물질이나 생물체(바이러스 및 균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sup>6</sup>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제2조에 따른 일-메틸사이클로프로펜발생기, 페로몬활용제품(대량포획용, 교미교란용), 에틸렌발생제

<sup>7</sup>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의 물질 및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인정한 물질

<sup>8</sup>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2의 물질 및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인정한 물질, 별표2의 3에 명시된 보존제

가. 산미제	DL-사과산, DL-주석산, L-주석산, 개미산, 개미산칼슘, 구연산, 글루콘산, 글루콘산칼슘, 낙산(부티르산), 낙산나트륨, 낙산칼슘, 소르빈산,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인산, 젖산, 초산, 푸말산(푸마르산), 호박산
나. 향응고제	실리카(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칼슘, 염화주석, 화이트카본, 활성탄
다. 향산화제	레스베라트롤, 몰식자산, 몰식자산프로필, 부틸하이드록시안니솔, 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 에톡시킴, 케르세틴
라. 항곰팡이제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마. 합제	산미제 합제, 향응고제 합제, 향산화제 합제, 항곰팡이제 합제, 보존제 합제(산미제부터 항곰팡이제의 합제를 말함)

대상	소관부처	법률	세부 내용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2호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식품위생법 제2조 제5호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동물용 포함)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제2조제4호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약사법 제2조제7호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sup>9</sup>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약외품 범위 지정」 1, 2, 3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생리대, 탐폰, 생리컵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환부의 보존,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안대, 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원통형 탄력붕대(스티키넷), 거즈, 탈지면, 반창고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	구취 등의 방지제	
	사람의 보건을 목적으로 인체에 적용하는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	흡연욕구 저하 목적 제품,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의 제품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소독제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
	연고제, 파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및 스프레이파스
	내복용 제제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자양강장변질제 중 내용액제, 건위소화제로서 내용액제 및 정장제로서 내용고형제
유사 의약외품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치아근관의 세척·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액제, 유·소아의 손발기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외용액제, 산제 등, 구강이 방지제(보조제), 치아미백제, 의치 및 치아교정기 세척 및 소독제, 구강 내 치태 뜯는 설태의 염색 또는 착색에 사용되는 제제
	가. 패드, 스폰지등과 같이 환부의 삼출물 등의 흡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접촉성 물품 나. 멸균면봉, 멸균장갑등과 같이 감염예방 등의 목적으로 외과처치시 사용되는 멸균된 물품 다. 치아와 잇몸을 닦아주는 구강 청결용 물휴지 라.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마. 등산, 운동 전·후 등에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사람이 흡입하도록 사용하는 휴대용 물품 바. 제1호 각목(가목에 따른 의약외품)과 유사한 물품	

대상	소관부처	법률	세부 내용
동물용 의약품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과학원	<p>약사법 제2조제7호</p> <p>「동물용 의약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p> <p>「수산물 동물용 의약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p>	<p>「약사법」 제2조제7호·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및 수산물 동물용 의약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용 의약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제</li> <li>2. 동물용 해충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다만, 직접 동물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물체내에 흡수되어 작용하는 제제는 제외)</li> <li>3. 애완동물용 제제 등</li> </ol> </li> <li>• 수산물 동물용 의약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산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제</li> <li>2. 수산동물용 해충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다만, 직접 수산동물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물체내에 흡수되어 작용하는 제제는 제외)</li> <li>3. 수산동물의 창상보호제 등</li> </ol> </li> </ul>
위생용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제1호	<p>“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p> <p>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li> <li>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li> </ol> <p>나. 행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행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p> <p>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p> <p>라. 기타 위생용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li> <li>2)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li> <li>3)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li> <li>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sup>10</sup></li> </ol>

10 「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일회용팬티라이너 및 마른 티슈(최종적으로 물을 넣어 사용)

대상	소관부처	법률	세부 내용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p>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lt;개정 2018. 12. 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li> <li>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li> <li>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li> <li>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li> </ol>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제2조제1호	<p>“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p>
유기식품	농림수산물식품부 해양수산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p>“유기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p>
비식용유기가공품	농림수산물식품부 해양수산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p>“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p>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농림수산물식품부 해양수산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	<p>“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p>

대상	소관부처	법률	세부 내용
유기농어업자재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허용물질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부록 2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및 답변

**Q.1** 제품에서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된 목적인 경우와 부수적 목적인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 ⓐ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①대중(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와 ②제품의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 ⓑ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은 (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 (나) 특정 생물의 종류를 명시하는 등 유해한 생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 (다) 구체적 설명 없이 ‘항균’ 이나 ‘방충’ 등 살생물 효과·효능을 주장하여 암묵적으로 대중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입니다.
- ⓒ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이 되는 경우는 (가) 살생물 기능이 없으면 제품의 가치가 현격히 저하되는 경우, (나)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유일한 기능인 경우, (다) 제품의 명칭에 ‘항균’이나 ‘항균처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라) 99.9% 제거 등 구체적인 효능을 주장하는 경우, (마) 굵은 글씨나 다른 글자체와 색깔 등으로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Q.2** 제품의 주된 목적과 주기능은 어떻게 다른가요?

- ⓐ 제품의 주된 목적은 대중(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와 제품의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 ⓑ 제품의 주기능은 제품의 여러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이라는 뜻으로, 해당 기능이 없으면 제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거나 제품의 다른 기능에 비해 강조되는 기능을 말합니다.

**Q.3** 살균제와 기피제 등은 현재 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인데요. 이들 제품도 살균력 등의 효능 표시에 제한이 있나요?

- ⓐ 법 제10조제4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살균제와 기피제 등 신고 대상 안생품도 사용한 살생물물질로 인한 제품의 효과와 효능에 관한 사항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제품으로 시험한 효과·효능 자료만 인정되며, 원료물질 등의 시험자료로 입증된 효과·효능은 원료물질에 대한 것이므로 표시·광고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개정사항에 대해 신규제품은 '21년 7월 1일부터, '21년 7월 1일 이전에 신고한 안생품의 경우는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Q.4** 안생품 중 살균제, 살충제, 기피제로 신고 또는 승인 받은 제품이면 앞으로도 살생물제품 승인 없이 안생품으로 계속 판매할 수 있나요?

- ① 안생품 중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10개입니다. 이 제품들은 살생물제품 승인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안생품 품목에서 제외되므로, 지속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살균제와 구제제(9개 품목)는 2024년까지, 목재용보존제(1개 품목)는 2026년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유예기간 이후에는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받지 않은 제품은 시장 판매가 불가합니다. (본 가이드라인 2.5 참고)
- ③ 다만, 살생물물질별 승인유예기간이 상기 구분과 다를 수 있으므로(예, Hydroxyl radical 등)「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최신 정보 확인 후 법 부칙제3조에 따라 살생물제품 유예기간 산정 필요

**Q.5** 세탁세제에 살균제를 이용해 보존처리를 하였는데 괜찮나요?

- ① 보존처리는 살균제가 아닌 보존제로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이내에는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되거나 승인된 살생물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6** 보존제 대신 살균제를 넣은 세탁세제는 항균기능을 광고할 수 있나요?

- ① 살균제를 넣어 살생물기능을 갖게 된 세탁세제에 대한 항균기능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안생품 신고 시 세탁세제와 함께 살균제 품목으로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세탁세제는 살생물 제품에도 해당되므로 승인유예기간 내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7** 의류의 항균, 소취, 방취와 같은 기능을 홍보할 경우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나요?

- ① 의류에 보존 및 소취 등 제품의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다면 살생물처리제품으로 간주되며, 항균과 같은 살생물 기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등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② 포괄적으로 항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에 해당하거나, 제품명에 '항균' 등을 표기하는 등 제품의 주기능으로의 주장에 해당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므로 표시·광고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다만, 소취나 방취의 경우 해당 기작(祈禱)이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한 유해생물의 제거 등으로 발생하는 기능이 아니라면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제품의 보존 등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했다면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함)  
※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3. 살생물처리제품과 살생물제품의 구분, 4.2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참고

**Q.8**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항균제를 수입하여, 원사에 첨가하여 항균 원사를 제조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나요?

- ① 수입한 항균제가 미생물로부터 원사를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원사는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합니다.
- ② 항균제의 수입자는 항균제에 대한 살생물제품 승인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해당 항균제에는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Q.9** 수입 라텍스 제품에 살균 기능이 아닌 제품 보존의 목적으로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제품은 최종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일반 소비자용으로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나요?

- ① 수입되는 라텍스 제품에 보존제가 함유되어 있고 지속적인 보존 기능을 발휘한다면 해당 라텍스 제품은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합니다.
- ② 법에 규정된 살생물제(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는 일반 소비자용 뿐 아니라 산업용도 해당합니다.
- ③ 또한 법 제28조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의 효과·효능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법 제20조) 또는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법 제28조)을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표시기준 준수의 의무는 없습니다.

**Q.10** 가구 제작 시 방부제를 극소량 첨가하였는데, 이 경우도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나요?

- ① 살생물처리제품 여부는 살생물제품이나 살생물물질의 농도 또는 함유량과는 관계없이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물질의 의도적 함유 여부와 사용 목적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구의 보존을 목적으로 보존제를 사용한 경우는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합니다.
- ② 참고로, 살생물처리제품의 효과·효능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또는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을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나, 표시기준 준수의 의무는 없습니다.

**Q.11** 보존제(원료의 유통·보관을 위해 사용)가 포함된 산업용 원료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산업용 원료는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지 않는지?

- ① 보존제를 함유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최종 제품의 제조 시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원료자체의 유통·보관 중의 보존 기능만을 위해서 보존제가 사용되고, 해당 보존제가 최종 제품에서 의도된 살생물 기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해당 원료와 최종 제품 모두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2** 보존처리된 탈취제 또는 방향제 등의 제품은 신고 대상 안생품이면서 살생물처리제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표시·광고하는 내용에 따라 살생물제품이 될 수도 있나요?

- ① 제품에 살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이 됩니다. 탈취제나 방향제에 살균력이 있다고 표시·광고할 경우, 현재에도 안생품 살균제로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된 안생품(살균제)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② 또한 해당 제품은 살생물제품에도 해당하므로,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내 안생품 살균제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살생물제품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국내 제조·수입·판매·유통이 가능합니다.
- ③ '24년에 승인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살생물제품의 경우 안생품 신고품목에서 삭제될 예정임(물질별, 살생물제품유형별로 상이하므로 건별 확인 필요)
- ④ 2025년 1월 1일부터는 신고·승인된 안생품이라도 살생물제품 승인 없이 해당(살균·살충·기피·살서·살조) 효과·효능을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13**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은 언제부터 이행해야 하나요?

- ① 살생물처리제품은 법 부칙 제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법 부칙 <제15511호> 제3조제1항각호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년까지는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경과조치는 '4.3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이행 시기' 참조
- ② 다만, 살생물제품으로의 효과·효능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품목에 따라 현재에도 미신고된 살균제 또는 미승인된 소독제, 살충제 등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14** 살생물처리제품 안전·표시기준, 기록·보존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① **(법 제28조, 안전·표시기준)**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제 57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습니다.
- ② **(법 제30조, 정보 제공 등)**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가 해당 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처리제품 제조·수입자에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후에 환경부장관의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③ **(법 제34조, 표시·광고의 제한)**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처럼 표시·광고할 경우, 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④ **(법 제36조, 새로운 위해성 보고 등)** 살생물제의 위해성 또는 위해성 등에 관한 새로운 정보 등에 대한 보고를 지체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⑤ **(법 제49조, 기록·보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록 및 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5** 살생물처리제품에 표시·광고 가능한 표현은 무엇인가?

- ① 살생물처리제품에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살생물제품과 확연히 구별될 수 있는 표시·광고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에서 표시·광고 가능한 표현의 기본 원칙은 본 가이드라인의 제1장의 정의, 제3장의 구분방법, 별표4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6** 살생물처리제품으로 구성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 ① 두 제품 모두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므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시) 향균처리된 섬유와 그 섬유로 만든 기능성 옷은 각각 처리제품의 이행사항 준수 필요

**Q.17** 외국 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의 범위는?

- ① 외국 정부의 확인을 받은 물질 또는 제품은 국내의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 승인 시의 안전성 평가 수준에 부합하는 유럽, 미국 등의 국가에 한정됨

**Q.18** 외국 정부의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은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인지?

- ① 유사성 기준은 국외에서 해당 살생물제품(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포함)의 안전성이 승인·등록으로 **확인·유지**되어 이를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이 제조·수입·유통되는 동안 **유효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 새로운 유·위해성의 확인 등으로 승인·등록이 갱신되지 못하거나 재평가 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유사성 기준 적용 불가

**Q.19** 수입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물질이 국외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받은 살생물물질로, 공개된 승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관련 서류를 확보할 필요는 없는지? 필요하다면 제품 내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이 사용되었다는 서류와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 ①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의 유사성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그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 유사성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확보 의무 및 그 종류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승인된 바에 따라 해당 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으로 사용된 살생물물질
- 2)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고시한 살생물물질
- 3) 외국 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해당 살생물제품 유형으로 사용될 경우에 대한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살생물물질

나. 외국 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통하여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이 인정되었을 것

※ 유사성 인정은 해당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이 외국 정부의 승인·등록 상태로 유지되는 동안에만 유효함에 따라 새로운 유·위해성이 확인되어 승인·등록이 갱신되지 않거나 취소되는 경우, 해당 유사성은 인정받을 수 없음

- ② 다만,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법 제30조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가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한 경우, 처리제품을 제조·수입한 자는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 ③ 따라서, 유사성 기준에 관한 법 규정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증빙서류 종류의 예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및 해당 물질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법 제12조제1항)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외국 정부의 승인·확인 등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승인된 살생물제품 유형으로 사용될 경우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받은 서류 및 해당 물질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외국 정부의 승인·확인 등을 통하여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이 인정된 서류 및 해당 제품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기타 유사성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전략)

- 6.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한다.
- 9.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후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것 (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될 것
  - 2. 그 밖에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②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1.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 3.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 4.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승인된 바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살생물물질
- 나.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 2.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통하여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이 인정되었을 것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 4.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그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의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청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청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열람청구서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열람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의 3일 전까지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거부하려는 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에 거부 사실 및 거부 사유를 적어 청구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항 전단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열람 명령의 신청 등)

-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 사본 및 해당 살생물처리제품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정보청구결과통지서 사본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정보의 제공·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명령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정보의 제공·열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보제공·열람 명령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 ② 제품승인등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4.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
-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전략)**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1. 권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권고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4. 권고 수용 여부 통지 기한
5. 권고 수용 거부 시의 조치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권고의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1. 권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권고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3. 권고의 수용 여부
  4. 권고의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③ 제2항에 따라 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고 수용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사진 등의 기본정보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내용
  3. 향후 조치계획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치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2. 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 조치를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4. 조치를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5. 조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회수명령 등)**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회수, 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수, 폐기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명령,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4.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치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2. 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4. 조치명령을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5. 조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위반사실 공표)**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2항 전단, 제2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2조(위반 사실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3.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위반 내용
  5.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기록 및 보고)**

-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조 또는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의 명칭·제품명 및 수량
  4. 살생물제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5.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사용량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출입·검사·수거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시험·검사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시험·검사기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안전성, 용기, 포장 및 제조·보관시설 등에 대한 검사
  2. 제1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용기, 포장 등의 무상 수거
  3.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또는 시험·검사업무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출입·검사·수거 등)**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미리 출입·검사의 목적 및 일시, 검사의 내용 등을 해당 제조자·수입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 4.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 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 7.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 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검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국립환경과학원
  - 2. 시험·검사기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1의2.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1의3.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2.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3.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4.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동등성을 인정받거나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6. 제16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동등성을 다시 인정받지 아니하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0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15조 단서 또는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5조 또는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5. 제3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 6.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 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8.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9.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0.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 11.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1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7. 제23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8. 제23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유사성을 인정받거나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10. 제25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품유사성을 다시 인정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11. 제27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1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14.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검사업무를 한 자
-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갈음하여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변경승인,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선임된 자를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선임된 자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에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이하 예시 제품은 모두 살생물제품(보존제 등)을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되었으며, 제품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거나 다른 법에 저촉될 수도 있으니, 화학제품안전법 준수를 위한 광고 내용 구성 등에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 살생물처리제품으로서 부적합한 광고 사례의 대부분은 제품의 살균력, 항균력을 주장하는 경우로, 이는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광고 내용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21년 7월 1일부터 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의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국환경산업기술원)하도록 관리중입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4항(신고) 및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즉, 안생품이면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의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 ① 해당 제품으로 시험한 효과·효능 자료를 제출하여
    - ② 안생품으로 신고 또는 승인받은 후
    - ③ 시장 유통이 가능하며
    - ④ 입증된 내용에 한해서만 표시·광고가 가능합니다.
    - ⑤ 살생물제품에 해당한다면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내에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1

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1) 세정제

세정제 제품명과 광고에 사용하는 표현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과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적합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① 세정제로 부적합한 표현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살생물제품이 되는 부적합한 표현
제품명	-	•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 방지', '항진드기', '방충' 등 유해생물의 제거나 억제 뜻하는 용어가 제품명에 포함되는 경우 (주기능 "다")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살생물제품이 되는 부적합한 표현
광고 문구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이 아니라 제품 자체를 보호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그러한 느낌을 주는 표현(대중의 건강 보호 "가", "나", "다")</li> <li>• 살균, 소독 등의 기능을 주장하는 경우로 살균제에 해당하며, 제품에서의 살생물 기능이 없는 경우 제품의 가치가 현격히 저하되는 경우(주기능 "가")</li> <li>• 제품 보호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 방지', '항진드기', '방충' 등의 표현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중의 건강 보호 "다")</li> <li>• 살생물 기능을 주장하면서 99.9% 제거 등 구체적 효과와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주기능 "라")</li> <li>• 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주기능 "마")</li> </ul>

살균제로 살생물제품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인 세정제 제품에는 세정제의 유통기한을 확보하기 위한 보존제 사용 이외에는 다른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세정제에 다른 설명 없이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드기' 등으로만 표시한다면, 이는 제품의 보존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품 사용 대상에 대한 '항균', '항바이러스' 등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제품은 안생품 품목 중 살균제로도 신고를 해야하며,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24년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② 세정제로 적합한 표현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세정제는 처리에 사용된 살생물제품 유형이 제품 보존용 보존제에 해당하며, '항균'을 막연히 언급하지 않고 제품의 보존을 목적으로 보존 처리되었음을 광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살생물 기능 구분	처리에 사용한 살생물제품 유형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세정제의 유통기한 연장(제품 보존)	보존제류(제품보존용)	"항균"을 막연히 언급하지 않고, "제품 보존"을 명시

③ 세정제로 적합한 표시 광고 예시 및 부적합한 예시

세정제의 광고 문구 중 살생물제품이 되지 않는 적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번	상세 품목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광고 문구	적합 사유
1	부리는 세정제	세정제에 제품 보존을 위해 어린이용 용도의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보존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세정제를 위한 보존제가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표현
2	섬유용 세정제	진드기 사체나 배설물을 닦아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진드기 사체와 배설물은 무생물로서 살생물 기능과 무관함
3	변기 세정제	세균이 만든 찌든 때 제거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찌든 때를 제거하는 것이므로 살생물 기능과 무관함

살생물처리제품 광고 문구로 부적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번	상세 품목	살생물처리제품에 부적합한 광고 문구	부적합 사유	권고
1	욕실용 세정제	99.9% 살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특정 유해생물을 명시함으로써 대중의 건강 보호 “나”에 해당하는 주장 및 살균 표현 사용, 주기능 “라”에 해당하는 구체적 효능 표현 (99.9%)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12월 31일 이전) 효과·효능 입증 시험자료 등을 준비하여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살균제'로도 신고</li> <li>· ('24년 12월 31일 이후) 살생물제품으로 승인</li> </ul>
2	욕실 청소용 세정제	유해세균 99.9% 제거	살균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균제임, 주기능 “라”에 해당하는 구체적 효능 표현 (99.9%) 사용	
3	욕실 청소용세정제	세균제거 욕실 물때를 한번에	세균 제거를 주장하고 있어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균제임	
4	변기 세정제	99.9% 유해세균 살균	살균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균제임, 주기능 “라”에 해당하는 구체적 효능 표현 (99.9%) 사용	
5	곰팡이용 세정제	99.9% 박테리아 곰팡이 살균. 강력세정& 살균효과	살균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균제임, 주기능 “라”에 해당하는 구체적 효능 표현 (99.9%) 사용	
6	변기 세정제	살균 소독 약취 찌든때 제거	살균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균제임, 주기능 “라”에 해당하는 구체적 효능 표현 (99.9%) 사용	

위의 부적합한 광고 문구(4번)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게 되면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 품목	기존 광고	수정 광고
변기 세정제	99.9% 유해세균 살균	(‘살균’, ‘유해세균’과 ‘99.9%’ 삭제) 세정제가 미생물을 없애지는 않지만, 변기에 미생물이 자라면서 만든 얼룩이나 냄새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2) 방향제 및 탈취제(방향·탈취제품)

방향제 및 탈취제 제품명과 광고에 사용하는 표현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과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적합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 ① 방향제 및 탈취제로 부적합한 표현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살생물제품이 되는 부적합한 표현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균’, ‘곰팡이 방지’, ‘항바이러스’ 등 유해생물의 제거나 억제를 뜻하는 용어가 제품명에 포함되는 경우(주기능 “다”)</li> </ul>
광고 문구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이 아니라 제품 자체를 보호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그러한 느낌을 주는 표현(대중의 건강 보호 “가”, “나”, “다”)</li> <li>· 살균, 소독 등의 기능을 주장하는 경우로 살균제에 해당하며, 제품에서의 살생물 기능이 없는 경우 제품의 가치가 현격히 저하되는 경우(주기능 “가”)</li> <li>· 제품 보호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 방지’ 등의 표현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중의 건강 보호 “다”)</li> <li>· 99.9% 등 살생물 기능의 효과와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주기능 “라”)</li> <li>· 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주기능 “마”)</li> </ul>

방향제 및 탈취제 제품에 대해 살생물처리하는 이유는 방향제 및 탈취제의 유통기한을 확보하기 위한 보존제 처리 이외에 다른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방향제 및 탈취제로 적합한 표현

살생물 기능 구분	처리에 사용한 살생물제품 유형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방향제 및 탈취제의 유통기한 연장 (제품 보존)	보존제류(제품보존용)	“항균”을 막연히 언급하지 않고, “제품 보존”을 명시

방향제 및 탈취제에 다른 설명 없이 '항균', '항바이러스'라고 표시한다면, 이는 제품의 보존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품 사용 대상에 대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 중 살균제로도 신고를 해야하며,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24년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 3 방향제 및 탈취제로 적합한 표시 광고 예시 및 부적합한 예시

방향제 및 탈취제의 광고 문구 중 살생물제품이 되지 않는 **적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번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광고 문구	적합 사유
1	섬유탈취스프레이	세균이 만들어낸 냄새를 제거합니다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의 냄새를 제거
2	곰팡이 냄새 제거용	곰팡이 냄새 제거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 냄새를 제거

살생물처리제품 광고 문구로 **부적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번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부적합한 광고 문구	부적합 사유	권고
1	실내용 방향제	항균 99.9%(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특정 유해 세균명을 명시함으로써 대중의 건강 보호 "나"에 해당하는 주장 살균 표현을 사용(문맥상 항균은 살균으로 간주)하고 있어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균제임, 주기능 "라"에 해당하는 구체적 효능 표현(99.9%)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12월 31일 이전) 효과·효능 입증 시험자료 등을 준비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살균제'로도 신고</li> <li>· ('24년 12월 31일 이후) 살생물제품으로 승인</li> </ul>
2	실내용 방향제	99.9% 제거하는 항균제	살균 표현을 사용(문맥상 항균은 살균으로 간주)하고 있어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균제임, 주기능 "라"에 해당하는 구체적 효능 표현(99.9%) 사용	
3	실내용 방향제	세균 99.9%, 소취 90%	살균 표현을 사용(문맥상 세균은 살균으로 간주)하고 있어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균제임, 주기능 "라"에 해당하는 구체적 효능 표현(99.9%) 사용	
4	복숭아향 탈취제	4가지균 살균 99.9% 포도상구균, 녹농균, 대장균, 살모넬라균	특정 유해 세균명을 명시함으로써 대중의 건강 보호 "나"에 해당하는 주장, 살균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균제임, 주기능 "라"에 해당하는 구체적 효능 표현(99.9%) 사용	
5	기능성 탈취제	99% 탈취 & 항균 효과	살균 표현을 사용(문맥상 항균은 살균으로 간주)하고 있어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균제임, 주기능 "라"에 해당하는 구체적 효능 표현(99.9%) 사용	
6	구조도 탈취제	항균	포괄적인 항균 등을 명시함으로써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다"에 해당하는 주장	

### 3)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제품명과 광고에 사용하는 표현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과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적합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 1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로 부적합한 표현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살생물제품이 되는 부적합한 표현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균', '곰팡이 방지', '항바이러스' 등 유해생물의 제거나 억제를 뜻하는 용어가 제품명에 포함되는 경우(주기능 "다")</li> </ul>
광고 문구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이 아니라 제품 자체를 보호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그러한 느낌을 주는 표현(대중의 건강 보호 "가", "나", "다")</li> <li>· 살균, 소독 등의 기능을 주장하는 경우로 살균제에 해당하며, 제품에서의 살생물 기능이 없는 경우 제품의 가치가 현격히 저하되는 경우(주기능 "가")</li> <li>· 제품 보호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 방지' 등의 표현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중의 건강 보호 "다")</li> <li>· 99.9% 등 살생물 기능의 효과와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주기능 "라")</li> <li>· 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주기능 "마")</li> </ul>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제품에 대해 살생물 처리하는 이유는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의 유통기한을 확보하기 위한 보존제 처리 이외에 다른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2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로 적합한 표현

살생물 기능 구분	처리에 사용한 살생물제품 유형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의 유통기한 연장(제품 보존)	보존제류(제품보존용)	"항균"을 막연히 언급하지 않고, "제품 보존"을 명시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에 다른 설명 없이 다른 설명 없이 '항균', '항바이러스'라고 표시한다면, 이는 제품의 보존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품 사용 대상에 대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중 살균제로도 신고를 해야하며,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24년 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항진드기'라고 표시하는 경우에도 이는 살생물제품으로의 기능을 의미하므로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된다.

### 3)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로 적합한 표시 광고 예시 및 부적합한 예시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의 광고 문구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번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광고 문구	적합 사유
1	세탁세제	알려지 원인이 되는 진드기 사체 및 배설물을 99% 제거	진드기의 사체 및 배설물은 생물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살생물처리제품 광고 문구로 부적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번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부적합한 광고 문구	부적합 사유	권고
1	세탁세제	진드기 99% 제거	특정 유해 생물인 진드기를 명시함으로써 대중의 건강 보호 “나”에 해당하는 주장 진드기 제거라는 표현을 사용(문맥상 살충으로 간주)하고 있어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충제임, 주기능 “라”에 해당하는 구체적 효능 표현(99.9%)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12월 31일 이전) 효과·효능 입증 시험자료 등을 준비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살균제’로도 신고</li> <li>• (‘24년 12월 31일 이후) 살생물제품으로 승인</li> </ul>
2	섬유유연제	항균효과의 데이저킷 추출물	살균 표현을 사용(문맥상 항균은 살균으로 간주)하고 있어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균제임	
3	세탁세제	항균 99.9% 초강력 항균 세탁으로 특유의 냄새까지 싹	살균 표현을 사용(문맥상 항균은 살균으로 간주),하고 있어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균제임, 주기능 “라”에 해당하는 구체적 효능 표현(99.9%) 사용	
4	세탁세제	과탄산나트륨 살균 표백 효과	살균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균제임	
5	세탁세제	냄새 원인균 살균과 오염까지 제거	살균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균제임	
6	세탁세제	특수 항균 성분 함유로 의류 속에 기생하는 대장균, 포도상구균 등의 세균을 98% 이상 제거합니다	특정 유해 세균명을 명시함으로써 대중의 건강 보호 “나”에 해당하는 주장 세균 제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균제임, 주기능 “라”에 해당하는 구체적 효능 표현(99.9%) 사용	
7	섬유유연제	항균 실내 건조	포괄적인 항균 등을 명시함으로써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다”에 해당하는 주장	
8	섬유유연제	세균으로 인해 발생하는 냄새까지 잡아줍니다	섬유의 냄새를 일으키는 세균을 제거한다는 뜻이므로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균제임	

### 4) 표백제

표백제 제품명과 광고에 사용하는 표현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과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적합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 1) 표백제로 부적합한 표현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살생물제품이 되는 부적합한 표현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균’, ‘곰팡이 방지’, ‘항바이러스’ 등 유해생물의 제거나 억제를 뜻하는 용어가 제품명에 포함되는 경우(주기능)</li> </ul>
광고 문구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이 아니라 제품 자체를 보호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그러한 느낌을 주는 표현(대중의 건강 보호 “가”, “나”, “다”)</li> <li>• 살균, 소독 등의 기능을 주장하는 경우로 살균제에 해당하며, 제품에서의 살생물 기능이 없는 경우 제품의 가치가 현격히 저하되는 경우(주기능 “가”)</li> <li>• 제품 보호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 방지’ 등의 표현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중의 건강 보호 “다”)</li> <li>• 99.9% 등 살생물 기능의 효과와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주기능 “라”)</li> <li>• 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주기능 “마”)</li> </ul>

표백제 제품에 대해 살생물 처리하는 이유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보하기 위한 보존제 처리 이외에 다른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표백제의 경우는 보존제 처리의 필요성이 적은 편이나, 사용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2) 표백제로 적합한 표현

살생물 기능 구분	처리에 사용한 살생물제품 유형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표백제의 유통기한 연장(제품 보존)	보존제류(제품보존용)	“항균”을 막연히 언급하지 않고, “제품 보존”을 명시

표백제에 다른 설명 없이 ‘항균’이라고 표시한다면, 이는 제품의 보존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품 사용 대상에 대한 ‘항균’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제품은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 3 표백제로 적합한 표시 광고 예시 및 부적합한 예시

표백제가 살생물제품이 되는 광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번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부적합한 광고 문구	부적합 사유	권고
1	표백제	99.9% 살균효과까지!	살균이라는 표현 사용하여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균제임, 구체적 효능 표현(99.9%) 사용하여 주기능 “라”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년 12월 31일 이전) 효과·효능을 입증하는 시험자료를 준비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신고 또는 방역용 소독제 승인</li> <li>(24년 12월 31일 이후)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받은 경우만 제조·수입·판매 가능</li> </ul>
2	표백제	감기 독감 바이러스 99.9% 제거	제거는 살균이므로,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균제임, 특정 유해 세균명을 명시함으로써 대중의 건강 보호 “나”에 해당, 구체적 효능 표현(99.9%) 사용하여 주기능 “라”에 해당	
3	표백제	욕조, 세면대, 타일바닥 청소 및 소독	소독이라는 표현 사용하여 주기능 “라”에 해당하는 살균제 또는 살균소독제임	
4	표백제	락스 냄새는 줄이고 살균, 소독, 표백 효과까지	살균이라는 표현 사용하여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균제임.	
5	표백제	세제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각종 세균을 99.9% 살균합니다	살균이라는 표현 사용하여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균제임, 특정 유해 세균명을 명시함으로써 대중의 건강 보호 “나”에 해당, 구체적 효능 표현(99.9%) 사용하여 주기능 “라”에 해당	
6	표백제	특수 항균 성분 함유로 의류 속에 기생하는 대장균, 포도상구균 등의 세균을 98% 이상 제거합니다	세균 제거는 살균이라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균제임, 특정 유해 세균명을 명시함으로써 대중의 건강 보호 “나”에 해당, 구체적 효능 표현(98%) 사용하여 주기능 “라”에 해당	
7	표백제	삶지 않고도 인체 유해균이 99.9% 살균됩니다	살균이라는 표현 사용하여 주기능 “가”에 해당하는 살균제임, 구체적 효능 표현(99.9%) 사용하여 주기능 “라”에 해당	

### 5) 습기제거제

습기제거제 제품명과 광고에 사용하는 표현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과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적합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 1 습기제거제로 부적합한 표현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살생물제품이 되는 부적합한 표현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균’, ‘곰팡이 방지’, ‘항바이러스’ 등 유해생물의 제거나 억제를 뜻하는 용어가 제품명에 포함되는 경우(주기능 “다”)</li> </ul>
광고 문구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이 아니라 제품 자체를 보호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그러한 느낌을 주는 표현(대중의 건강 보호 “가”, “나”, “다”)</li> <li>살균, 소독 등의 기능을 주장하는 경우로 살균제에 해당하며, 제품에서의 살생물 기능이 없는 경우 제품의 가치가 현격히 저하되는 경우(주기능 “가”)</li> <li>제품 보호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곰팡이 방지’ 등의 표현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중의 건강 보호 “다”)</li> <li>99.9% 등 살생물 기능의 효과와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주기능 “라”)</li> <li>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 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주기능 “마”)</li> </ul>

습기제거제 제품에 대해 살생물 처리를 하는 경우는 인형이나 방석 형태의 습기제거제에 곰팡이 등의 서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또한 제품 보호의 목적에만 해당한다.

#### 2 습기제거제로 적합한 표현

살생물 기능 구분	처리에 사용한 살생물제품 유형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습기제거제의 보호(제품 보존)	보존제류(제품보존용)	“항균”을 막연히 언급하지 않고, “제품 보존”을 명시

습기제거제제품에 대해 살생물 처리하는 이유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보하기 위한 보존제 처리 이외에 다른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3 습기제거제로 적합한 표시 광고 예시 및 부적합한 예시

습기제거제의 광고 문구 중 살생물제품과 무관한 **적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번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광고 문구	적합 사유
1	다목적 제습제	탈취효과	살생물처리와 관련 없음
2	신발용 제습제	신발 속 악취와 습기를 간편하게	살생물처리와 관련 없음

살생물처리제품 광고 문구로 **부적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습기제거를 통해 곰팡이가 자라기 어려운 건조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대부분이다.

연번	구분	광고 문구	부적합 사유	권고
1	옷장용 제습제	습기제거, 냄새방지, 곰팡이 방지	곰팡이를 방지하는 것이 습도를 낮춘 효과라는 것 언급 없음,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하도록 광고 수정
2	서랍용 제습제	습기, 곰팡이, 냄새를 한 번에 해결하는 똑똑한 제습제	곰팡이를 방지하는 것이 습도를 낮춘 효과라는 것 언급 없음,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	
3	제습제	곰팡이 예방	곰팡이를 방지하는 것이 습도를 낮춘 효과라는 것 언급 없음,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	

부적합한 광고 문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게 되면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습기제거를 통해 곰팡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번	구분	기존 광고	수정 광고
1	제습제	곰팡이 예방	습기를 제거하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옷장용 제습제	습기제거, 냄새방지, 곰팡이 방지	습기를 제거하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고, 냄새도 방지합니다

## 2

### 공산품 등 기타제품

#### 1) 침구류

이불이나 베개 등 침구류 제품명과 광고에 사용하는 표현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과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적합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 1 침구류로 부적합한 표현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살생물제품이 되는 부적합한 표현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균’, ‘곰팡이 방지’, ‘항바이러스’ 등 유해생물의 제거나 억제를 뜻하는 용어가 제품명에 포함되는 경우(주기능 “다”)</li> </ul>
광고 문구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이 아니라 제품 자체를 보호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그러한 느낌을 주는 표현(대중의 건강 보호 “가”, “나”, “다”)</li> <li>제품 보호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 방지’ 등의 표현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중의 건강 보호 “다”)</li> <li>99.9% 등 살생물 기능의 효과와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주기능 “라”)</li> <li>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주기능 “마”)</li> </ul>

침구류에 살생물 처리를 하는 목적은 침구류에 곰팡이나 세균이 성장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 보존과 보호 목적이 대부분이고, 섬유에서 날 수 있는 세균으로 인한 냄새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제품 보존과 보호 목적으로 간주된다.

##### 2 침구류로 적합한 표현

살생물 기능 구분	처리에 사용한 살생물제품 유형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침구류의 보호(제품 보존)	보존제류(제품보존용)	“항균”을 막연히 언급하지 않고, “제품 보존”을 명시

침구류에 다른 설명 없이 ‘항균’이라고 표시한다면, 이는 제품의 보존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품 사용 대상에 대한 ‘항균’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제품은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침구류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표현 중에는 ‘진드기 방지’나 ‘진드기 차단’이라는 용어가 있다. 진드기를 명시하는 것은 유해생물을 특정하는 것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나)’로 간주되어 살생물제품이 될 수 있다.

만약 진드기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기피제를 처리한 제품이라면 침구류가 기피제의 매개체가 되므로 이 역시 살생물제품이 된다.

반면 최근 시장에서 발견되는 제품 중에는 살생물 처리와 상관없이 섬유 구조를 촘촘히 만들어서 진드기가 통과할 수 없는 제품이 등장하고 있고, 이 경우 진드기 방지의 기전을 명확하게 밝힌다면 살생물제품이나 살생물처리제품 둘 다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 3 방향제 및 탈취제로 적합한 표시 광고 예시 및 부적합한 예시

침구류의 광고 문구 중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적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번	구분	광고 문구	적합 사유
1	베개	고밀도 원사를 사용하여 집먼지 진드기 통과 방지	섬유의 구조로 진드기 차단
2	매트커버	기능성 원단을 사용해 진드기 투과 방지	

살생물처리제품이 되기에 부적합한 광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항균 또는 진드기 방지 등 소비자에게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들이 대부분이다.

연번	구분	광고 문구	부적합 사유	권고
1	유아베개	포도상구균, 폐렴간균 등 인체에 유해한 세균을 99.9% 항균하여 아이들을 세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건강보호를 명시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가”에 해당, 유해생물 특징으로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나”에 해당, 99.9% 효과 효능 주장하여 주기능 “라”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2	유아범퍼	항균 효과로 진드기 방지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보다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 유해생물 특징으로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나”에 해당	
3	이불	마이크로 화이버 항균솜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	
4	항균유아 베개솜	-	제품명에 항균 사용하여 주기능 “다”에 해당	
5	베개	항균, 소취, 속건, 쿨감 가공으로 속면의 쾌적환경 제공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	

부적합한 광고 문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게 되면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연번	구분	기존 제품명 또는 광고	수정 제품명 또는 광고
1	베개솜	제품명 항균 유아 베개솜	(항균 삭제) 유아 베개솜
2	이불	광고 마이크로 화이버 항균솜	(제품 보호 명시) 이불솜에 항균처리가 되어 이불솜에 미생물이 자라는 것을 억제합니다
3	유아범퍼	광고 항균 효과로 진드기 방지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보다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해생물명 제거) 유아범퍼에 항균처리가 되어 세균 등 유해생물이 잘 자라지 않게 돕습니다
4	유아 베개	광고 포도상구균, 폐렴간균 등 인체에 유해한 세균을 99.9% 항균하여 아이들을 세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유해생물명 및 99.9% 구체적 효과 주장 표현 삭제, 아이보호 삭제) 베개에 항균 처리가 되어 있어, 베개에 세균이 잘 자라지 않게 돕습니다

## 2) 의류

내의 등 의류 제품명과 광고에 사용하는 표현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과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적합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 1 의류로 부적합한 표현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살생물제품이 되는 부적합한 표현
제품명	-	• ‘항균’, ‘곰팡이 방지’, ‘항바이러스’ 등 유해생물의 제거나 억제를 뜻하는 용어가 제품명에 포함되는 경우(주기능 “다”)
광고 문구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이 아니라 제품 자체를 보호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그러한 느낌을 주는 표현(대중의 건강 보호 “가”, “나”, “다”) • 제품 보호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 방지’ 등의 표현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중의 건강 보호 “다”) • 99.9% 등 살생물 기능의 효과와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주기능 “라”) • 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주기능 “마”)

의류에 살생물 처리를 하는 주된 목적은 섬유에서 날 수 있는 세균으로 인한 냄새를 억제하기 위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제품의 보존이나 보호 목적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의류에 곰팡이나 세균이 성장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 보존과 보호 목적도 있다.

## 2 의류로 적합한 표현

살생물 기능 구분	처리에 사용한 살생물제품 유형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의류의 보호(제품 보존)	보존제류(제품보존용)	“항균”을 막연히 언급하지 않고, “제품 보존”을 명시

의류에 다른 설명 없이 ‘항균’이라고 표시한다면, 이는 제품의 보존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품 사용 대상에 대한 ‘항균’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제품은 살생물제품으로 간주 되어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 3 의류로 적합한 표시 광고 예시 및 부적합한 예시

의류의 광고 문구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번	구분	광고 문구	적합 사유
1	사각팬티	항균처리되어 땀냄새 억제에 효과적	항균처리 목적이 냄새 억제 명시
2	여성팬티	항균 소취 기능으로 세균 번식과 악취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쾌적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균처리 목적이 제품의 세균 번식 억제 및 냄새 억제 명시

살생물처리제품이 되기에 부적합한 광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품 보호에 대한 설명 없이 항균을 주장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들이 대부분이다.

연번	구분	광고 문구	부적합 사유	권고
1	남성런닝	탁월한 항균효과가 있으며 면 100%로 땀을 잘 흡수하는 위생내의입니다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2	유아내의	Natural Antivirus 99.99% 항균 순면 원단항균 가공으로 기침, 감기 원인 폐렴균, 대장균 피부염 원인 황색포도상구균 99.99% 차단하는 프리미엄 순면원단	감기 예방 주장은 대중 건강보호 주장 “가”에 해당, 유해생물 특징으로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나”에 해당, 99.99% 구체적 효과 효능 주장은 주기능 “라”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연번	구분	광고 문구	부적합 사유	권고
3	내의	구리 특유의 항균, 향취 효과. 카퍼라이트 구리 섬유는 항균 원단으로 세균 박멸, 정전기 방지, 전자파 차폐, 소취 효과까지 원단부터 다릅니다.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 제품이 아닌 구리의 살생물기능 언급 (세균 박멸)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4	여성 자켓	항균 기능이 있는 안심주머니감 적용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제품명 수정
5	토시	항균기능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부적합한 광고 문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게 되면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연번	구분	기존 제품명 또는 광고	수정 제품명 또는 광고
1	남성런닝	광고 탁월한 항균효과가 있으며 면 100%로 땀을 잘 흡수하는 위생내의입니다	(제품 보호 명시) 항균처리로 내의에 미생물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며, 면 100%로 땀을 잘 흡수합니다
2	유아내의	광고 Natural Antivirus 99.99% 항균 순면 원단항균 가공으로 기침, 감기 원인 폐렴균, 대장균 피부염 원인 황색포도상구균 99.99% 차단하는 프리미엄 순면원단	(구체적 효능표현 및 antivirus, 세균명 삭제) 순면 제품으로 원단이 항균처리 되어 있어 내의에 미생물이 자라는 것을 억제합니다
3	내의	광고 구리 특유의 항균, 향취 효과. 카퍼라이트 구리 섬유는 항균 원단으로 세균 박멸, 정전기 방지, 전자파 차폐, 소취 효과까지 원단부터 다릅니다.	(항균이 아니라 항균처리, 세균박멸 삭제) 항균처리된 원단을 사용하여 냄새를 억제합니다
4	여성 자켓	광고 항균 기능이 있는 안심주머니감 적용	(제품 보호 명시) 주머니는 항균처리된 원단을 사용하여 주머니 안에 미생물이 자라는 것을 억제합니다

### 3) 가구

가구 제품명과 광고에 사용하는 표현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과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적합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 1) 가구로 부적합한 표현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살생물제품이 되는 부적합한 표현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균’, ‘곰팡이 방지’, ‘항바이러스’ 등 유해생물의 제거나 억제를 뜻하는 용어가 제품명에 포함되는 경우(주기능 “다”)</li> </ul>
광고 문구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이 아니라 제품 자체를 보호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그러한 느낌을 주는 표현(대중의 건강 보호 “가”, “나”, “다”)</li> <li>제품 보호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 방지’ 등의 표현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중의 건강 보호 “다”)</li> <li>99.9% 등 살생물 기능의 효과와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주기능 “라”)</li> <li>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주기능 “마”)</li> </ul>

가구에 살생물 처리를 하는 주된 목적은 가구에 세균이 자라면서 썩거나 곰팡이가 자라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경우는 제품의 보존이나 보호에 해당한다.

#### 2) 가구로 적합한 표현

살생물 기능 구분	처리에 사용한 살생물제품 유형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가구의 보호(제품 보존)	보존제류(제품보존용)	“항균”을 막연히 언급하지 않고, “제품 보존”을 명시

가구에 다른 설명 없이 ‘항균’이라고 표시한다면, 이는 제품의 보존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품 사용 대상에 대한 ‘항균’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제품은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구의 경우 원목 재질로 된 것에 대해 피톤치드로 인한 항균 작용을 광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원목 가구에서 피톤치드가 방출되면서 벌레를 쫓거나 세균을 죽인다면, 그 가구는 피톤치드라는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이 된다.

### 3) 가구로 적합한 표시 광고 예시 및 부적합한 예시

가구의 광고 문구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번	구분	광고 문구	적합 사유
1	원형 테이블	방부목	방부목은 ‘항균처리를 통해 나무를 썩지 않게 했다’는 의미로서 범용적 표현으로 인정
2	화분받침	방부액으로 방부처리한 목재	방부처리는 항균처리와 같이 해석되며, 방부처리는 나무를 썩지 않게 한다는 뜻 포함됨

살생물처리제품이 되기에 부적합한 광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품 보호에 대한 설명 없이 항균을 주장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들이 대부분이다.

연번	구분	광고 문구	부적합 사유	권고
1	책상	자연유래 항생물질 피톤치드 함유	살생물물질이 책상에서 방출된다면 책상은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2	책상	합리적인 가격에 항균기능까지 더하다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	
3	침대 프레임	피톤치드는 인체의 면역력 강화, 항균, 소취 및 유해물질 중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 살생물물질 침대프레임에서 방출된다면 침대프레임은 살생물제품	

부적합한 광고 문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게 되면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연번	구분	기존 제품명 또는 광고	수정 제품명 또는 광고
1	책상	광고 자연유래 항생물질 피톤치드 함유	(‘항생물질’ 삭제) (광고) 피톤치드 함유
2	책상	광고 합리적인 가격에 항균 기능까지 더하다	(항균처리된 것이 아니므로 ‘항균’ 삭제) (광고) 합리적인 가격
3	침대 프레임	광고 피톤치드는 인체의 면역력 강화, 항균, 소취 및 유해물질 중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피톤치드 ‘항균’ 기능 삭제) (광고) 원목 침대로부터 피톤치드가 방출됩니다

#### 4) 도료

도료의 제품명과 광고에 사용하는 표현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과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적합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 1) 도료로 부적합한 표현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살생물제품이 되는 부적합한 표현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균’, ‘곰팡이 방지’, ‘항바이러스’ 등 유해생물의 제거나 억제를 뜻하는 용어가 제품명에 포함되는 경우(주기능 “다”)</li> </ul>
광고 문구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이 아니라 제품 자체를 보호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그러한 느낌을 주는 표현(대중의 건강 보호 “가”, “나”, “다”)</li> <li>· 살균, 소독 등의 기능을 주장하는 경우로 살균제에 해당하며, 제품에서의 살생물 기능이 없는 경우 제품의 가치가 현격히 저하되는 경우(주기능 “가”)</li> <li>· 제품 보호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 방지’ 등의 표현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중의 건강 보호 “다”)</li> <li>· 99.9% 등 살생물 기능의 효과와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주기능 “라”)</li> <li>· 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주기능 “마”)</li> </ul>

도료(페인트) 제품은 살생물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 기준이 적용된다.

##### 2) 도료로 적합한 표현

연번	살생물 기능 구분	처리에 사용한 살생물제품 유형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1	페인트의 유통기한 연장(제품 보존)	보존제류 (제품보존용)	“항균”을 막연히 언급하지 않고, “제품 보존”을 명시
2	페인트 표면의 곰팡이 번식 억제 및 오염 방지(제품 보존)	보존제류 (제품표면처리용)	“항균처리”로 페인트를 바른 표면에 곰팡이를 억제한다는 것을 명시(곰팡이 얼룩으로부터 깨끗한 페인트 표면 유지 등 표현 가능)
3	목재 등 페인트를 바른 대상에 미생물이 성장하거나 썩지 않게 함(방부, 살균)	살균제류(살균제)	없음 <sup>1</sup>
4	페인트를 바른 곳에 유해생물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기피)	구제제류(기피제)	없음 <sup>2</sup>

연번	살생물 기능 구분	처리에 사용한 살생물제품 유형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5	선박이나 수중 시설에 페인트를 발라 유해생물의 성장 또는 정착을 억제함	기타(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균제류, 구제제류	없음 <sup>3</sup>

- 1) 페인트가 방부제나 살균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살생물제품이 됨
- 2) 페인트의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된 기능에 해당하므로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살생물제품이 됨
- 3) 법 제9조제1항 살생물제품유형 중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에 해당하므로 살생물제품이 됨

##### 3) 도료로 적합한 표시 광고 예시 및 부적합한 예시

도료(페인트)의 광고 문구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번	광고 문구	적합 사유
1	냄새가 거의 없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곰팡이 방지기능으로 오랫동안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 칠한 곳에 곰팡이가 잘 자라지 못하여 깨끗함이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함
2	세라믹 플러스는 천연의 특수 다공성 원리로 결로에 효과적이고 습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 곰팡이 생성을 억제시켜주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페인트 칠한 곳에 곰팡이가 잘 자라지 못한다는 점 명확히 설명

살생물처리제품 광고 문구로 부적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번	광고 문구	부적합 사유	권고
1	페인트를 바르는 것만으로 포름알데히드와 TVOC 수치 공기질(냄새)과 곰팡이 감소 탈취 효과 뿐 아니라 우리 몸에 유해한 포름알데히드와 곰팡이 및 TVOC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인트 위의 곰팡이가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내의 곰팡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살생물제품일 때 가능. 주기능 “가”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2	대한민국 대표 항바이러스 페인트(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Porcine entro virus) 99.9% 바이러스 사멸	곰팡이 억제 수준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므로, 페인트에 살균기능이 있다고 받아들여짐. 주기능 “가”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3	방균, 방부 기능이 있어 목재 보호 효과가 뛰어납니다	목재가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로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주기능 “가”에 해당	’28년까지 살생물제품 승인 추진
4	해수 중에 있는 동식물의 부착방지를 위하여 아산화동과 티프리형의 특수 방오제를 사용하여 제조한 도료입니다.	선박 방오도료는 주기능 “가”에 해당	’31년까지 살생물제품 승인 추진

연번	광고 문구	부적합 사유	권고
5	결로방지 및 곰팡이 예방 습기차단 기능으로 건강에 위협을 주는 결로로 인한 곰팡이를 방지합니다.	건강에 위협을 주는 곰팡이를 방지하는 주장은 대중의 건강보호 “가”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문구 변경
6	항생과 항균 작용이 뛰어나 세균과 곰팡이 균을 억제시켜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함께하는 공간에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노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대중의 건강보호 “가”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문구 변경
7	친환경 인증마크와 항균마크(Anti-포름알데히드)를 획득한 국가 인증 제품으로 냄새가 거의 없어 임산부나 어린이들 공간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나 어린이 보호에 항균성이 도움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 대중의 건강보호 “다”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문구 변경
8	항균제 첨가	제품 보호 등 구체적 설명이 없으므로 대중의 건강보호 “다”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문구 변경
9	항균페인트	제품 보호 등 구체적 설명이 없으므로 대중의 건강보호 “다”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문구 변경
10	우수한 항균성: 항세균성 및 항곰팡이성이 뛰어남	제품 보호 등 구체적 설명이 없으므로 대중의 건강보호 “다”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문구 변경
11	습기가 많은 내부에도 탁월한 항균력을 가진 하이테크 내부용 도료	제품 보호 등 구체적 설명이 없으므로 대중의 건강보호 “다”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문구 변경
12	항균 99% 항균마크 보유	99% 등 구체적 효과 효능 주장은 주기능 “라”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문구 변경

다음과 같이 기존 광고를 수정하는 경우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다.

연번	기존 광고	수정 광고
1	항균 99% 항균마크 보유	(주기능 해당하는 “99%” 삭제 및 제품보호 명시) “페인트를 칠한 곳에 곰팡이가 잘 자라지 않도록 항균처리 되었습니다”
2	항균페인트	(제품 보호 명시) “페인트를 칠한 곳에 곰팡이가 잘 자라지 않도록 항균처리 되었습니다”
3	친환경 인증마크와 항균마크(Anti-포름알데히드)를 획득한 국가 인증 제품으로 냄새가 거의 없어 임산부나 어린이들 공간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보호 명시) “페인트를 칠한 곳에 곰팡이가 잘 자라지 않도록 항균처리 되어있어, 페인트 칠한 부분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 5) 가방

가방의 제품명과 광고에 사용하는 표현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과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적합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 1) 가방으로 부적합한 표현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살생물제품이 되는 부적합한 표현
제품명	-	• ‘항균’, ‘곰팡이 방지’, ‘항바이러스’ 등 유해생물의 제거나 억제를 뜻하는 용어가 제품명에 포함되는 경우(주기능 “다”)
광고 문구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이 아니라 제품 자체를 보호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그러한 느낌을 주는 표현(대중의 건강 보호 “가”, “나”, “다”) • 제품 보호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 방지’ 등의 표현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중의 건강 보호 “다”) • 99.9% 등 살생물 기능의 효과와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주기능 “라”) • 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주기능 “마”)

가방에 살생물 처리를 하는 주된 목적은 가방에 세균이 자라면서 썩거나 곰팡이가 자라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경우는 가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제품의 보존이나 보호에 해당한다. 가방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미생물로부터 보호한다고 주장하면, 이것은 제품 자체의 보호가 아니므로 살생물제품에 해당한다.

### 2) 가방으로 적합한 표현

살생물 기능 구분	처리에 사용한 살생물제품 유형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가방의 보호(제품 보존)	보존제류(제품보존용)	“항균”을 막연히 언급하지 않고, “제품 보존”을 명시

가방에 다른 설명 없이 ‘항균’이라고 표시한다면, 이는 제품의 보존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품 사용 대상에 대한 ‘항균’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제품은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 3) 가방으로 적합한 표시 광고 예시 및 부적합한 예시

가방의 광고 문구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분	광고 문구	적합 사유
가방	항균 재질 처리로 (가방) 안에서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곰팡이 방지효과가 있어 습기에 강합니다. 인증검사 결과 이 원단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곰팡이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항균처리로 원단에 세균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것 밝힘

살생물처리제품이 되기에 부적합한 광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품 보호에 대한 설명 없이 항균을 주장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이 대부분이다.

연번	구분	광고 문구	부적합 사유	권고
1	가방	안전한 항균필름 사이드 포켓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2	백팩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라! *** 항균 백팩은 구리와 아연의 강력한 항바이러스물질로 제작되어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나 세균이 묻을 경우 바이러스나 세균 등을 사멸시켜 우리 아이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세균을 제거하여 건강 보호한다는 주장에 해당하므로 대중의 건강보호 “가”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3	백팩	항균 안감 사용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없이 항균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부적합한 광고 문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게 되면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연번	구분	기존 제품명 또는 광고		수정 제품명 또는 광고
1	가방	광고	안전한 항균필름 사이드 포켓	(항균이 아닌 항균처리) 항균처리된 필름을 사용한 사이드 포켓
2	백팩	광고	항균 백팩은 구리와 아연의 강력한 항바이러스물질로 제작되어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나 세균이 묻을 경우 바이러스나 세균 등을 사멸시켜 우리 아이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아이 보호 삭제) 백팩에 항균처리된 소재를 사용하여 세균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구리와 아연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3	백팩	광고	항균 안감 사용	(구체적인 제품 보호 명시) 항균처리된 안감을 사용하여 가방 내에 세균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 6) 신발

신발의 제품명과 광고에 사용하는 표현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과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적합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 1 신발로 부적합한 표현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살생물제품이 되는 부적합한 표현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균’, ‘곰팡이 방지’, ‘항바이러스’ 등 유해생물의 제거나 억제를 뜻하는 용어가 제품명에 포함되는 경우(주기능 “다”)</li> </ul>
광고 문구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이 아니라 제품 자체를 보호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그러한 느낌을 주는 표현(대중의 건강 보호 “가”, “나”, “다”)</li> <li>제품 보호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 방지’ 등의 표현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중의 건강 보호 “다”)</li> <li>99.9% 등 살생물 기능의 효과와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주기능 “라”)</li> <li>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 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주기능 “마”)</li> </ul>

신발에 살생물 처리를 하는 주된 목적은 신발에 세균이 자라면서 썩거나 곰팡이가 자라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경우는 신발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제품의 보존이나 보호에 해당한다. 만약 신발을 신은 대상의 발이나 몸을 미생물로부터 보호한다고 주장하면, 이것은 제품 자체의 보호가 아니므로 살생물제품에 해당한다.

### 2 신발로 적합한 표현

살생물 기능 구분	처리에 사용한 살생물제품 유형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신발의 보호(제품 보존)	보존제류(제품보존용)	“항균”을 막연히 언급하지 않고, “제품 보존”을 명시

신발에 다른 설명 없이 ‘항균’이라고 표시한다면, 이는 제품의 보존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품 사용 대상에 대한 ‘항균’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제품은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 3 신발로 적합한 표시 광고 예시 및 부적합한 예시

신발의 광고 문구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분	광고 문구	적합 사유
장화	친환경 EVA 소재 사용으로 매우 가벼운 장화. 항균 위생 기능으로 발냄새 및 세균 증식 방지 기능	발냄새를 억제하고 세균 증식을 방지한다는 언급을 통해 제품 보호를 명시하였다고 판단. 단, 더 바람직한 표현은 “항균 위생 기능으로”가 아니라 “항균처리로”임.

살생물처리제품이 되기에 부적합한 광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품 보호에 대한 설명 없이 항균을 주장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들이 대부분이다.

연번	구분	광고 문구	부적합 사유	권고
1	운동화	Ortholite를 활용한 라스팅 기법으로 항균성과 쿠셔닝이 뛰어납니다.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2	부츠	Agion 항균 처리가 적용된 안감은 혈행성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감염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한다는 주장은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가”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3	부츠	습기 흡수 및 항균 기능이 적용된 안감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4	등산화	항균, 소취 기능이 탁월한 인솔 적용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부적합한 광고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게 되면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신발의 경우 냄새 억제와 연결되어 항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항균처리되어 냄새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번	구분	기존 제품명 또는 광고	수정 제품명 또는 광고
1	운동화	광고 Ortholite를 활용한 라스팅 기법으로 항균성과 쿠셔닝이 뛰어납니다.	(항균처리) Ortholite를 활용한 라스팅 기법으로 미생물을 억제하는 항균처리가 되어 있고 쿠셔닝이 뛰어납니다.
2	부츠	광고 Agion 항균 처리가 적용된 안감은 혈행성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건강 보호 삭제) Agion 항균 처리가 적용된 안감은 세균 억제와 냄새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3	부츠	광고 습기 흡수 및 항균 기능이 적용된 안감	(항균처리) 습기 흡수 능력이 있고 항균처리가 된 안감
4	등산화	광고 항균, 소취 기능이 탁월한 인솔 적용	(항균처리) 항균처리가 되어 냄새를 억제하는 인솔 적용

## 7) 마스크

마스크는 의약외품인 마스크가 있고 공산품인 마스크가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산품인 마스크에만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술용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KF-80, 94, 99),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의약외품 마스크에 해당한다. 이 마스크는 감염을 차단하거나 호흡기 보호가 목적이므로, 건강 보호 관련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세 종류의 마스크 외의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볼 수 있으며, 보온용 마스크가 대표적이다.

공산품 마스크의 제품명과 광고에 사용하는 표현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과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적합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 1) 마스크로 부적합한 표현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살생물제품이 되는 부적합한 표현
제품명	-	• ‘항균’, ‘곰팡이 방지’, ‘항바이러스’ 등 유해생물의 제거나 억제를 뜻하는 용어가 제품명에 포함되는 경우(주기능 “다”)
광고 문구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이 아니라 제품 자체를 보호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그러한 느낌을 주는 표현(대중의 건강 보호 “가”, “나”, “다”) • 제품 보호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 방지’ 등의 표현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중의 건강 보호 “다”) • 99.9% 등 살생물 기능의 효과와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주기능 “라”) • 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 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주기능 “마”)

마스크에 살생물처리를 하는 주된 목적은 마스크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라면서 더러워지거나 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경우는 마스크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제품의 보존이나 보호에 해당한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미생물로부터 보호한다고 주장하면, 살생물제품에 해당한다.

### 2) 마스크로 적합한 표현

살생물 기능 구분	처리에 사용한 살생물제품 유형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마스크의 보호(제품 보존)	보존제류(제품보존용)	“항균”을 막연히 언급하지 않고, “제품 보존”을 명시

‘항균 마스크’와 같이 마스크에 다른 설명 없이 ‘항균’이라고 표시한다면, 이는 제품의 보존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품 사용 대상에 대한 ‘항균’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제품은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 3) 마스크로 적합한 표시 광고 예시 및 부적합한 예시

마스크의 광고 문구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분	광고 문구	적합 사유
마스크	특수항균 필터를 사용하여 냄새 억제	항균처리 필터를 통해 마스크에 미생물 번식을 억제해 냄새를 억제한다고 밝힘. 단, 더 바람직한 표현은 “항균 필터”가 아니라 “항균처리 필터”임.

살생물처리제품이 되기에 부적합한 광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품 보호에 대한 설명 없이 항균을 주장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들이 대부분이다.

연번	구분	광고 문구	부적합 사유	권고
1	마스크	항균기능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2	마스크	항균력 99.9% 마스크 항균 패드. 폐렴균, 대장균 등 99.9% 항균력, 냄새제거	유해생물 명시는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나”에 해당하고, 99.9%는 주기능 “라”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3	마스크	항균 효과 소취 효과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부적합한 광고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게 되면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마스크의 경우 냄새 억제와 연결되어 항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항균처리되어 냄새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번	구분	기존 제품명 또는 광고		수정 제품명 또는 광고
1	마스크	광고	항균기능	(제품보호 명시) 항균처리가 되어 마스크에 미생물이 자라는 것을 억제합니다
2	마스크	광고	항균력 99.9% 마스크 항균 패드. 폐렴균, 대장균 등 99.9% 항균력, 냄새제거	(유해세균명, 99.9% 삭제) 항균처리가 되어 냄새를 발생시키는 미생물 성장을 억제합니다
3	마스크	광고	항균 효과 소취 효과	(항균처리, 제품보호 명시) 항균처리가 되어 냄새를 발생시키는 미생물 성장을 억제합니다

### 8) 마스크 파우치

마스크 파우치의 제품명과 광고에 사용하는 표현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과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적합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 1) 마스크 파우치로 부적합한 표현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살생물제품이 되는 부적합한 표현
제품명	-	• ‘항균’, ‘곰팡이 방지’, ‘항바이러스’ 등 유해생물의 제거나 억제를 뜻하는 용어가 제품명에 포함되는 경우(주기능 “다”)
광고 문구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이 아니라 제품 자체를 보호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그러한 느낌을 주는 표현(대중의 건강 보호 “가”, “나”, “다”) • 제품 보호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 방지’ 등의 표현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중의 건강 보호 “다”) • 99.9% 등 살생물 기능의 효과와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주기능 “라”) • 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주기능 “마”)

마스크 파우치에 살생물처리를 하는 주된 목적은 마스크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마스크 파우치에 세균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마스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파우치를 보호하는 것으로 제품의 보존이나 보호에 해당한다. 만약 마스크 파우치에 보관한 마스크의 미생물을 제거한다고 하면 살생물제품에 해당한다.

#### 2) 마스크 파우치로 적합한 표현

살생물 기능 구분	처리에 사용한 살생물제품 유형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마스크 파우치의 보호(제품 보존)	보존제류(제품보존용)	“항균”을 막연히 언급하지 않고, “제품 보존”을 명시

마스크 파우치에 다른 설명 없이 ‘항균’이라고 표시한다면, 이는 제품의 보존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품 사용 대상에 대한 ‘항균’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제품은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 3) 마스크 파우치로 적합한 표시 광고 예시 및 부적합한 예시

마스크의 광고 문구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분	광고 문구	적합 사유
마스크 파우치	항균처리된 마스크케이스. 항균 처리되어 마스크를 위생적으로 보관	마스크 파우치에 항균처리로 마스크를 위생적으로 보호한다고 명시

살생물처리제품이 되기에 부적합한 광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품 보호에 대한 설명 없이 항균을 주장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이 대부분이다.

연번	구분	광고 문구	부적합 사유	권고
1	마스크 파우치	항균 마스크 보관케이스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2	마스크 파우치	항색포도상구균 대장균 폐렴구균 99.9% 항균	유해생물 명시는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나"에 해당하고, 99.9%는 주기능 "라"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3	마스크 파우치	세균 잡는 휴대용 마스크 케이스	살균 주장으로 주기능 "가"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부적합한 광고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게 되면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연번	구분	기존 제품명 또는 광고	수정 제품명 또는 광고
1	마스크 파우치	광고 항균 마스크 보관케이스	(항균처리) 항균처리된 마스크 보관케이스로, 마스크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마스크 파우치	광고 항색포도상구균 대장균 폐렴구균 99.9% 항균	(유해세균명 삭제, 99.9% 삭제) 항균처리된 마스크 보관케이스로, 마스크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마스크 파우치	광고 세균 잡는 휴대용 마스크 케이스	(세균 잡는 삭제) 항균처리된 마스크 보관케이스로, 마스크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9) 욕조와 변기시트 및 변기커버

화장실 용품 중 욕조, 변기시트 및 변기커버의 제품명과 광고에 사용하는 표현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과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적합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 1 욕조와 변기시트 및 변기커버로 부적합한 표현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살생물제품이 되는 부적합한 표현
제품명	-	• '항균', '곰팡이 방지', '진드기 방지' 등 유해생물의 제거나 억제에 뜻하는 용어가 제품명에 포함되는 경우(주기능 "다")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살생물제품이 되는 부적합한 표현
광고 문구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이 아니라 제품 자체를 보호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그러한 느낌을 주는 표현(대중의 건강 보호 "가", "나", "다")</li> <li>• 제품 보호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항균', '진드기 방지', '곰팡이 방지' 등의 표현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중의 건강 보호 "다")</li> <li>• 99.9% 등 살생물 기능의 효과와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주기능 "라")</li> </ul>

욕조나 변기시트 및 변기커버에 살생물 처리를 하는 주된 목적은 위생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세균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제품의 보존이나 보호에 해당한다. 만약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면 살생물제품에 해당한다.

### 2 욕조와 변기시트 및 변기커버로 적합한 표현

살생물 기능 구분	처리에 사용한 살생물제품 유형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욕조, 변기시트 및 변기커버의 보호(제품 보존)	보존제류(제품보존용)	"항균"을 막연히 언급하지 않고, "제품 보존"을 명시

욕조나 변기시트 및 변기커버에 다른 설명 없이 '항균'이라고 표시한다면, 이는 제품의 보존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품 사용 대상에 대한 '항균'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제품은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 3 욕조와 변기시트 및 변기커버로 적합한 표시 광고 예시 및 부적합한 예시

광고 문구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분	광고 문구	적합 사유
변기시트	항균제 첨가로 세균의 번식을 막으며 곰팡이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주는 위생적인 변기시트입니다.	항균처리로 제품을 보호하는 것 명시

살생물처리제품이 되기에 부적합한 광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품 보호에 대한 설명 없이 항균을 주장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이 대부분이다.

연번	구분	광고 문구	부적합 사유	권고
1	욕조	항균력 실험 결과 세균(항색포도상구균, 대장균) 감소 ↓99.9%	유해생물 명시는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나"에 해당하고, 99.9%는 주기능 "라"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연번	구분	광고 문구	부적합 사유	권고
2	변기커버	대장균 및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하여 99.9%의 항균력	유해생물 명시는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나”에 해당하고, 99.9%는 주기능 “라”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3	변기커버	70만마리의 세균으로부터 지키세요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4	변기시트	항균력 99.9%로 위생적입니다	99.9%는 주기능 “라”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부적합한 광고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게 되면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연번	구분	기존 제품명 또는 광고		수정 제품명 또는 광고
1	욕조	광고	항균력 실험 결과 세균(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감소 ↓ 99.9%	(유해세균명과 99.9% 삭제) 항균처리된 욕조로 미생물 성장을 억제합니다
2	변기커버	광고	대장균 및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하여 99.9%의 항균력	(유해세균명과 99.9% 삭제) 항균처리된 변기커버로 미생물 성장을 억제합니다
3	변기커버	광고	항균력 99.9%로 위생적입니다	(99.9% 삭제) 항균처리된 변기시트로 미생물 성장을 억제합니다

## 10) 매트

매트의 제품명과 광고에 사용하는 표현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과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적합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 1 매트로 부적합한 표현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살생물제품이 되는 부적합한 표현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균’, ‘곰팡이 방지’, ‘항바이러스’ 등 유해생물의 제거나 억제를 뜻하는 용어가 제품명에 포함되는 경우(주기능 “다”)</li> </ul>
광고 문구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이 아니라 제품 자체를 보호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그러한 느낌을 주는 표현(대중의 건강 보호 “가”, “나”, “다”)</li> <li>제품 보호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 방지’ 등의 표현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중의 건강 보호 “다”)</li> <li>99.9% 등 살생물 기능의 효과와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주기능 “라”)</li> <li>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주기능 “마”)</li> </ul>

매트에 살생물 처리를 하는 주된 목적은 매트에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제품의 보존이나 보호에 해당한다. 만약 매트의 미생물을 제거하여 사람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면 살생물제품에 해당한다.

### 2 매트로 적합한 표현

살생물 기능 구분	처리에 사용한 살생물제품 유형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매트의 보호(제품 보존)	보존제류(제품보존용)	“항균”을 막연히 언급하지 않고, “제품 보존”을 명시

매트에 다른 설명 없이 ‘항균’이라고 표시한다면, 이는 제품의 보존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품 사용 대상에 대한 ‘항균’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제품은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 3 매트로 적합한 표시 광고 예시 및 부적합한 예시

매트의 광고 문구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분	광고 문구	적합 사유
매트	전 제품 방염, 항균 처리된 외장재 사용	항균 처리라고 하여 제품을 보호한다고 해석됨. 단, 구체적으로 제품을 보호한다는 언급이 있으면 더 바람직함

살생물처리제품이 되기에 부적합한 광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품 보호에 대한 설명 없이 항균을 주장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이 대부분이다.

연번	구분	광고 문구	부적합 사유	권고
1	매트	위생적인 항균 원단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2	매트	항균 99.9%	99.9%는 주기능 “라”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부적합한 광고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게 되면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연번	구분	기존 제품명 또는 광고		수정 제품명 또는 광고
1	매트	광고	위생적인 항균 원단	(제품보호 명시) 항균 처리된 원단을 사용하여 매트에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억제합니다
2	매트	광고	항균 99.9%	(99.9% 삭제) 항균 처리를 하여 매트에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억제합니다

## 11) 벽지

벽지의 제품명과 광고에 사용하는 표현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과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적합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 1) 벽지로 부적합한 표현

구분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살생물제품이 되는 부적합한 표현
제품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균’, ‘곰팡이 방지’, ‘항바이러스’ 등 유해생물의 제거나 억제에 뜻하는 용어가 제품명에 포함되는 경우(주기능 “다”)</li> </ul>
광고 문구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이 아니라 제품 자체를 보호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의 사용자나 환경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거나 그러한 느낌을 주는 표현(대중의 건강 보호 “가”, “나”, “다”)</li> <li>· 제품 보호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 방지’ 등의 표현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중의 건강 보호 “다”)</li> <li>· 99.9% 등 살생물 기능의 효과와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주기능 “라”)</li> <li>· 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주기능 “마”)</li> </ul>

벽지에 살생물 처리를 하는 주된 목적은 벽지에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제품의 보존이나 보호에 해당한다. 만약 벽지의 미생물을 제거하여 사람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면 살생물제품에 해당한다.

### 2) 벽지로 적합한 표현

살생물 기능 구분	처리에 사용한 살생물제품 유형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현
벽지의 보호(제품 보존)	보존제류(제품보존용)	“항균”을 막연히 언급하지 않고, “제품 보존”을 명시

벽지에 다른 설명 없이 ‘항균’이라고 표시한다면, 이는 제품의 보존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품 사용 대상에 대한 ‘항균’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제품은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

### 3) 벽지로 적합한 표시 광고 예시 및 부적합한 예시

벽지의 광고 문구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분	광고 문구	적합 사유
벽지	항균 처리로 곰팡이 세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제품 보호 명확히 언급

살생물처리제품이 되기에 부적합한 광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품 보호에 대한 설명 없이 항균을 주장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이 대부분이다.

연번	구분	광고 문구	부적합 사유	권고
1	벽지	인테리어 항균 시트지	막연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 보호 주장 “다”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2	벽지	바이러스로 걱정되는 아이들 방터치만 해도 세균이 감소되는 항균 스티커로 아이방을 바꿔주세요	살균 기능 주장은 주기능 “가”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도록 광고 수정

부적합한 광고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게 되면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연번	구분	기존 제품명 또는 광고	수정 제품명 또는 광고
1	벽지	광고 인테리어 항균 시트지	(제품보호 명시) 항균처리가 되어 시트지에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억제합니다
2	벽지	광고 바이러스로 걱정되는 아이들 방터치만 해도 세균이 감소되는 항균 스티커로 아이방을 바꿔주세요	(건강보호 삭제) 항균처리된 스티커로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억제합니다

# 살생물처리 제품 제도 이행 가이드라인 (제2판)

발행일 2023년 9월  
발행처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의 02-2284-1888  
디자인·인쇄 ㈜전우용사촌